

연구보고서 2015-08

제주 공공기관 종사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책임자 : 이 화 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원 : 최 은 하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15. 11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성폭력 감소를 위한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성인지 의식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제주지역의 공공기관 종사자의 예방교육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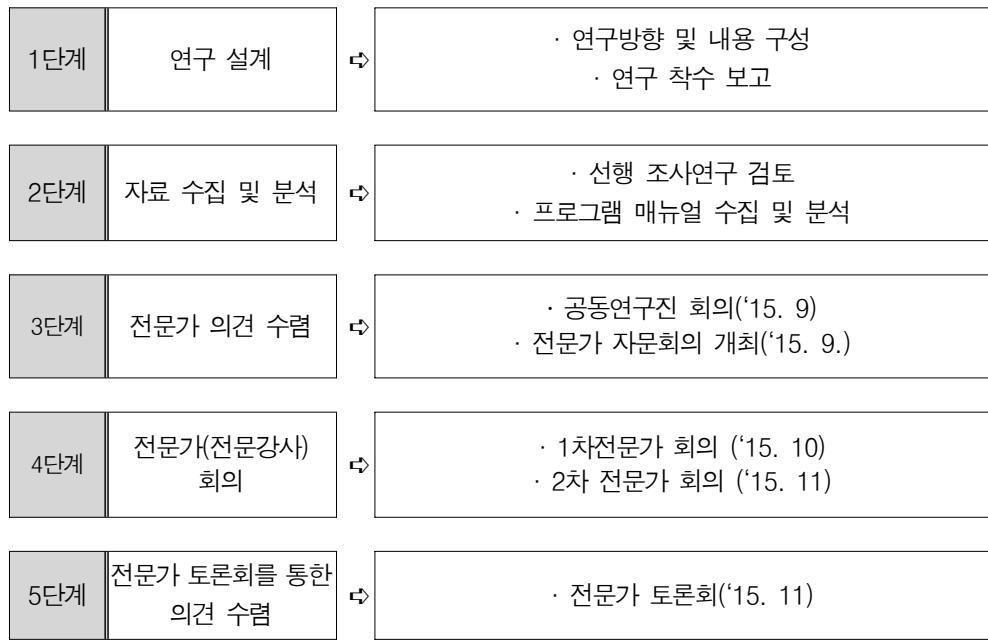
- 제주지역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실태
-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분석 (여성가족부 제작 중심)을 통한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파악
- 제주지역 전문 강사의 의견조사를 통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 파악
- 제주지역의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제시

3. 연구방법

가. 연구절차

- 본 연구는 8월에서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연구진행과정은 아래 표와 같음

연구수행 절차



나. 연구방법

- 제주 지역 및 타 지역의 성 평등 교육 자료 수집 및 분석
- 기존 문헌 연구 및 성 인지 교육 현황 조사
 - 성인지 교육 현황은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시행결과를 보고한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2014년도 자료, <https://shp.mogef.go.kr/>)를 분석함
- 제주지역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태 및 현황 조사
 - 제주지역 공공기관 종사자 성인지 교육 실태는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의 제주지역 자료를 분석함
 - 또한 본원에서 실시한 공무원과 교사 219명을 임의 표집한 예방교육 인식 조사 결과 일부를 인용함

-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는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예방교육 강사로 위촉된 전문강사를 중심으로 실시함
- 총 2회에 걸쳐 9명을 대상으로 집단인터뷰(FGI)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내용은 제주지역의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폭력예방교육의 방향, 핵심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를 정리함

제2장 이론적 배경

1.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에 대하여 널리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다르게 번역되고 해석되는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 (협의) 이상의 성평등의식(gender egalitarianism), 실행의지(behavioral or practical intention) 및 성인지력(gender awareness)까지의 성인지적 관점(광의)을 포함함

2. 폭력발생의 배경

가. 성역할(gender role) 고정관념

- 성역할 고정관념은 생물학적인 성으로만 개인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성별에 따라 고정된 역할과 기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자기주장과 지배적 성향 등이 높고 성취지향적인 특성은 남성의 역할로, 비독립적이며 순응적인 특성은 여성의 역할로 정의됨

나. 폭력통념

- 폭력통념은 폭력행위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고 특히 남성이 가지고 있는 폭력통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당연시하거나 폭력의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폭력의 피해자가 원만한 사회성과 적응성을 키우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에서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폭력 통념은 물론 피해자 유발 통념까지 형성한다는 점이 중요함

다. 남성중심적 조직문화

- 조직문화는 조직이 만들어낸 것으로 조직의 하위 시스템, 즉 내부변수로 볼 수 있음(김강식, 2010)
- 한국사회의 조직문화-남성중심적 가부장문화가 양성평등 의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함

3. 폭력의 성인지적 관점

가. 폭력의 성인지적 정의

- 폭력은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는 그 대상이 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광의의 의미로 성희롱과 성매매를 포함함
- 실무에서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성인지적 통합 폭력, 혹은 여성폭력 통합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포함한 통합 교육적 측면에서 젠더폭력과 혼용하여 쓰고 있는데 이는 성인지적 측면에서 남성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담고자 한 것임

나. 성인지적 폭력예방의 중요성

- 성인지적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 뿐 아니라 폭력에 대

한 성인지적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성인지적 감수성을 함양하여야만 배려와 존중, 소통이라는 폭력예방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임

다.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제고

- 교육을 통하여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발생률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검토하고, 배려와 존중을 기본으로 하며, 한국 사회 전반적인 인권의식 수준을 높이고 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 가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

제3장 폭력 예방 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1. 폭력 예방교육 현황

가. 전국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황

-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기관 수는 총 16,800 개소로 각급학교가 12,143개소로 가장 많고 전체적으로 2013년 16,600개소에서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임
- 기관유형별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에서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유형 모두에서 국가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는 높은 실 시율을 기록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장 낮은 실시율(94%~96%)을 나타내고 있음

나. 제주지역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현황

- 2014년 기준, 제주지역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대상기관 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를 합하여 모두 280개 기관으로 이는 2013년 278개소에 비해 2개소 증가한 수치임

- 2014년도 제주지역 공공기관의 폭력 예방교육 실시율은 전체적으로 전국에 비해 약간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기관 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이 96.4%로 가장 낮음
- 유형별 예방교육 실시율에서 모두 제주지역은 전국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제주지역의 예방교육 방법은 전체적으로 외부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54.5%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14.3%)이 교육을 하거나 사이버로 실시하는 경우(14.2%)도 상당수 있었음
- 외부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비율은 각급학교가 58.5%로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가 37.92%로 가장 낮음
 - 국가기관은 전문강사(27.8%)와 사이버 교육(18.5%)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특이한 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청각 교육의 비율이 높아(38.8%) 내실있는 교육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다.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 인식

- 폭력예방교육 방식
 - 교직원 및 공무원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를 함께 수강하는 형식의 예방교육이 4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희롱·성폭력만 수강하는 경우(27.6%)로 나타남
 - 네 가지 유형의 예방교육을 각각 따로 수강한다(12.0%)는 비율은 적었음
- 제주지역 공공기관의 폭력 예방교육은 전국에 비해 약간 낮은 실시율을 나타냄
- 제주지역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라.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

- 제주지역 공공기관의 폭력 예방교육은 전국에 비해 약간 낮은 실시율을 나타냄
- 교육방식에 있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강사나 전문강사 교육의 비중이 낮고 사이버 교육, 시청각 교육의 비중이 높아 예방교육이 부실할 우려가 있음

- 공무원 및 교사 대상 임의표집 조사결과 예방교육의 정보 및 지식전달이 예방교육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폭력의 개념에 대한 인지와 의사소통 등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다각화가 필요함

2.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분석

가. 표준 프로그램 구성

- 현재 제도적인 폭력 예방교육의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에서 표준 프로그램 구성안을 제시하고 있음
- 표준 강의안의 단계별 핵심목표는 1단계 편견깨기, 2단계 인식전환, 3단계 행동화로 설정되어 있고 각각의 단계에 따라 핵심내용과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나. 프로그램 분석대상 및 개요

- 기존 프로그램 내용 분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있는 공공기관 대상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 프로그램은 통합교육 강의안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교육 매뉴얼 이고 각 매뉴얼의 내용을 표준 프로그램 구성 단계별로 분석함
- 각 프로그램 매뉴얼을 1단계 편견깨기, 2단계 인식전환, 3단계 행동화에 해당되는 내용을 분류하여 분석함

다. 프로그램 내용 분석

- 프로그램 내용 분석 결과는 표와 같음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내용 분석

단계별 핵심목표	주제별 매뉴얼
편견깨기	• 통합교육 : ‘폭력예방의 통합적 이해’
	• 성매매: ‘성매매에 관한 편견, 그리고 편견 깨기’
	• 가정폭력: No More 가정폭력!
인식전환	• 성폭력: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 성희롱: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
	• 성매매: ‘성매매에 관한 편견, 그리고 편견 깨기’
행동화	• 통합교육: ‘폭력예방의 통합적 이해’
	• 성폭력: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 성희롱: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
	• 가정폭력 : No More 가정폭력!

라. 기존 프로그램 매뉴얼의 특징 및 시사점

- 프로그램 분석결과 통합교육,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주제별 매뉴얼에 교육의 핵심목표 구성요소가 균형적으로 들어있지 않아 단독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폭력의 유형이나 개념, 관련법 등 지식전달 내용 위주의 매뉴얼이라 교육 대상자들이 지루하고 식상함을 느껴 교육의 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음
-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내용이 부족함

3. 제주지역 폭력 예방교육의 문제점 및 프로그램 방향

가.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 제주지역 공공기관의 성인지 교육의 현황파악과 개선점을 진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은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예방 교육 전문 강사로 한정함
- 전문 강사 집단은 구체적으로 제주지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이거나 교사가 주요 구성원임
- 조사내용은 주로 현장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제도적 개선점, 그리고 프로그램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 등으로 구성함

나. 폭력 예방교육의 문제점 및 프로그램 방향

1) 폭력 예방교육의 문제점

- 교육시간의 부족 : 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한 시간 혹은 한 시간 반 내에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내용을 모두 다루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곳이 많음
-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피교육 대상자들이 오히려 교육을 식상하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음
- 사이버나 동영상 시청으로 교육을 대신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됨
-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집합식 교육도 효과가 별로 없음

2) 프로그램 방향

(1) 프로그램의 문제점

- 집단별, 대상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의 부재
- 회기에 걸친 단계별 프로그램이 없음
- 교육 프로그램 형식이 다양하지 못함
- 프로그램 내용이 단순하고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집중도 떨어짐

(2) 프로그램 방향

- 폭력들의 근원인 권력의 차이를 담아내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함
- 일방적 지식전달 교육이 아닌 소통과 공감에 관한 내용으로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일회성 교육이 아닌 단계별로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을 활용하여 본인의 성통념 지수를 확인하는 계기와 교육을 받는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가 의견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① 교육목표가 성차를 사회문화적 배경 안에서 인식하도록 설정 ② 성인지력을 향상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함

③ 여성과 남성의 식상한 대결구도는 지양하고 공감, 소통 등 감수성 관련 내용 추가 ④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프로그램에 포함 할 수 있음

제4장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구성 개요

가. 프로그램 목표 및 기본방향

- 성인지 감수성 향상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젠더폭력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상황을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
 - 젠더폭력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 행동으로 인한 영향, 즉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
 - 성인지 감수성 제고는 개인적으로는 인간관계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이와 같은 성평등한 조직문화 속에서 성장한 정책실무가는 향후 성인지적 정책 실천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함

나. 프로그램 구성요소

- 감수성 구성 지표는 감수성의 종류에 따라 정의가 상이하여 기준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 가운데 주로 정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도덕감수성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는 J. Rest가 창안한 4구성요소모형(The Four Component Model)과 이진영(2010)에 의해 도출한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ity) 측정도구를 재구성하여 활용함
-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의 하위요소로 상황(사실)지각 감수성, 결과지각 감수성, 책임지각 감수성을 선정함

2.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틀

가.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이 연구에서는 통합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지훈련을 성에 대한 다양성, 차이와 차별 구분하기, 통념 점검, 젠더 관련한 폭력 이슈분석 등의 내용으로 콘텐츠로 구성함.

통합교육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한 인지훈련 내용

구 分	내 용	활 용
총 론	각 교육의 공통영역 교육	최소 40분-120분
감정이입	섹슈얼리티의 이해	
개방성	성에 대한 다양성	
비폭력	성차별 및 폭력 통념 점검 성문화와 왜곡된 성인식	다양한 인지훈련
자기성찰	젠더 관련한 폭력 이슈분석 등	

나. 프로그램 구성을

- 이진영(2010)에 의해 도출한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ity) 측정도구의 구성 요소로 그 세부적 사례를 개발하여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구성함.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 구성을

기본목적	하위 목표	세부 활동	세부 목표
성 평등한 조직문화	감정이입	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이해 ② 타인과의 경계 훈련 ③ 피해자 이해	① 성적 의사소통 향상 ② 대인관계 향상 ③ 공감능력 향상
	개방성	①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 ② 차이와 차별 이해	① 다양성 및 인권 존중 ② 평등의 가치
	비폭력	① 왜곡된 성문화 확인 ② 가정폭력의 이해	① 건강한 성 인식 제고 ② 폭력발생의 올바른 귀인
	자기성찰	① 성 차별 인식 ② 성역할 고정관념 점검	① 자존감 향상 ② 성 평등정책 향상
	최종목표	① 성인지 감수성 향상 ② 성 인권 의식 제고	

제5장 프로그램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1. 프로그램의 특성

- 학습자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재창조·재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예시를 제시함
- 성인 학습자의 타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무교육의 현실을 수용하여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고 참여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활동중심으로 구성함
- 학습자가 토론과 질문을 통해 자신이 갖게 된 느낌과 생각을 비교함으로써 이론적 점검과 함께 잘못된 통념은 맥락적 설명을 통해 수정이 가능함
- 학습자는 종전의 경험과 이전의 지식을 재평가함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체득 할 수 있음
- 개인적 측면 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성차별 및 성 고정관념에서 이루어지는 젠더폭력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음
-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는 등 참여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2. 프로그램 활용방안

- 이 교육프로그램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여성정책담당자 외에도 일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제주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자 하는 시도만으로도 새로운 인식의 지평 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종전에 중앙에서 하달된 평준화된 교육에 의존해 왔던 것을 도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수행할 자력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도내 협조를 통해 자체적으로 강사 양성함으로써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 외에 활동에서 수행한 학습자들이 발굴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집약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과제

-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이해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새로운 견지에서 모색하기 위한 시도였으나 제주지역의 문화적 요소들을 발굴한다는 것이 결코 단기간에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다만 장기적 계획을 통해 단계별 수행이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
- 제주지역의 공공기관 종사자의 특성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의 현황자료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뿐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담아내지 못함
- 본 연구는 문화적 접근의 시도에 머무르는 아쉬움과 함께 통합강의를 수행하는 강사로 하여금 성인지적 관점의 문화적 요소를 학습자와 함께 발굴하는 과제를 남기고 향후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함

목 차

제 1 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4
가. 연구절차	4
나. 연구방법	5
다. 연구대상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1.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11
2. 폭력 발생의 배경	13
가. 성역할(gender role) 고정관념	13
나. 폭력 통념	14
다. 남성중심적 조직문화	15
3. 폭력의 성인지적 관점	16
가. 폭력의 성인지적 정의	16
나. 성인지적 폭력예방의 중요성	18
다.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제고	19
제 3 장 폭력예방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25
1. 폭력예방교육 현황	25

가. 전국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황	25
나. 제주지역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현황	29
다.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	38
라.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	43
2.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분석	44
가. 표준 프로그램 구성	44
나. 프로그램 분석대상 및 개요	45
다. 프로그램 내용 분석	46
라. 기존 프로그램 매뉴얼의 특징 및 시사점	65
3.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 및 프로그램 방향	66
가.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66
나. 폭력 예방교육의 문제점 및 프로그램 방향	68
제 4장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71
1. 프로그램 구성 개요	73
가. 프로그램 목표 및 기본방향	73
나. 프로그램 구성요소	74
2.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을	76
가. 프로그램 주요 내용	76
나. 프로그램 구성을	77
3. 프로그램 진행 및 지침	78
가. 프로그램 진행	78
나. 프로그램 진행 지침	79

4.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 예시	81
가. 감정이입 : 성적 의사소통	81
나. 개방성 : 섹슈얼리티와 평등	94
다. 비폭력 : 문화와 젠더폭력	101
라. 자기성찰 :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	108
제5장 프로그램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117
1. 프로그램의 특성	117
2. 프로그램의 활용방안	118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과제	118
참고문헌	120

표 목 차

〈표 3-1〉 전국 폭력 예방교육 대상기관	25
〈표 3-2〉 전국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26
〈표 3-3〉 전국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	26
〈표 3-4〉 전국 성희롱 예방교육 연도별 비교 현황	27
〈표 3-5〉 전국 성매매 예방교육 현황	28
〈표 3-6〉 전국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28
〈표 3-7〉 전국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	29
〈표 3-8〉 제주 폭력 예방교육 대상기관	30
〈표 3-9〉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30
〈표 3-10〉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비교	31
〈표 3-11〉 제주지역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32
〈표 3-12〉 제주지역 성매매 예방교육 현황	32
〈표 3-13〉 제주지역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33
〈표 3-14〉 제주지역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	34
〈표 3-15〉 제주지역 예방교육 유형별 교육방법	35
〈표 3-16〉 기관유형별 예방교육 방법	35
〈표 3-17〉 제주지역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36
〈표 3-18〉 제주지역 성매매 예방교육 방법	37
〈표 3-19〉 제주지역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37
〈표 3-20〉 제주지역 가정폭력 예방교육 방법	38
〈표 3-21〉 폭력예방교육 방식	39

〈표 3-22〉 가장 도움이 되는 폭력 예방교육 내용	40
〈표 3-23〉 폭력예방교육의 적합한 방법	41
〈표 3-24〉 폭력예방교육의 적정규모	42
〈표 3-25〉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	42
〈표 3-26〉 여성가족부의 표준 프로그램 구성 안	44
〈표 3-27〉 분석대상 프로그램 개요	46
〈표 3-28〉 편견깨기 프로그램 내용 : 통합교육	46
〈표 3-29〉 편견깨기 프로그램 내용 : 성매매	49
〈표 3-30〉 편견깨기 프로그램 내용 : 가정폭력 프로그램	50
〈표 3-31〉 인식전환 프로그램 내용 : 성폭력	52
〈표 3-32〉 인식전환 프로그램 내용 : 성희롱	54
〈표 3-33〉 인식전환 프로그램 내용 : 성매매	56
〈표 3-34〉 인식전환 프로그램 내용 : 가정폭력	58
〈표 3-35〉 행동화 프로그램 내용 : 통합교육	59
〈표 3-36〉 행동화 프로그램 내용 : 성폭력	61
〈표 3-37〉 행동화 프로그램 내용 : 성희롱	63
〈표 3-38〉 행동화 프로그램 내용 : 가정폭력	64
〈표 3-34〉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분석	65
〈표 3-35〉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대상	67
〈표 3-36〉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내용	67
〈표 4-1〉 통합교육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한 인지훈련 내용	76
〈표 4-2〉 성인지 감수성프로그램 구성 틀	77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5
〈그림 4-1〉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 구성요소	75

제 1 장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제주지역은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 관련 도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강화(30.2%)와 함께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25.8%)가 중요하다고 나타남(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4)
- 성폭력 감소를 위한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의식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계속해서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8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2014년 일부 개정)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2015. 7. 1 전면 실시되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성인지 교육) 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18조)’.
-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성인지 교육은 주로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관련 교육과 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업무 관련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평가는 위한 성인지 교육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 (2013 총 6회 939명, 2014 총 7회 776명, 2015 16회 705명 실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내부자료 2015)
 - 폭력 예방교육은 연간 1~2회에 머물고 있고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대규모 집합식 교육방식 위주로 참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 의무교육대상 기관의 예방교육실시 횟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1.93회, 성매매 1.53회, 성폭력 2.41회로 나타남 (2013 여성가족부)
 - 학교(1.91회)에 비해 국가기관 등(1.59회)이 성폭력 예방교육 횟수가 적을 뿐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교육 실시 비율도 학교보다 낮음(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에 의한 교육 비율 : 국가기관 4.3% 학교 63.6%)

- 교육횟수,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 공무원 폭력 예방교육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공무원 대상 성인지 예방교육은 현재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집합식 교육으로 진행, 혹은 사이버나 동영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여성가족부의 대부분의 전문강사가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대상별, 연령별 맞춤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제주지역의 공공기관 종사자의 예방교육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및 성차별에 관한 문화적 배경 이해
- 제주지역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실태
-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분석 (여성가족부 제작 중심)을 통한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파악
- 제주지역 전문 강사의 의견조사를 통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 파악
- 제주지역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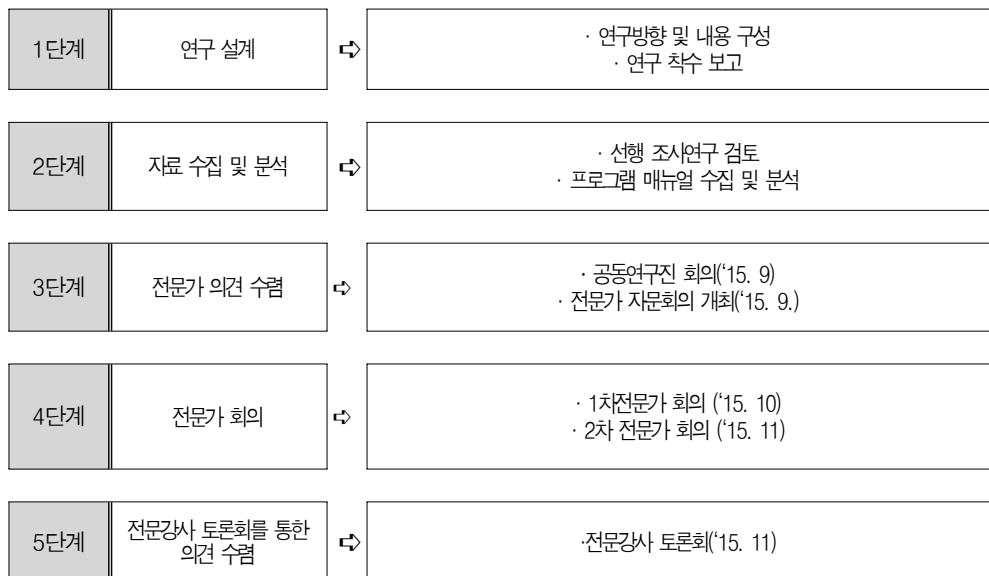
3. 연구 방법

가. 연구절차

- 본 연구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연구진 회의를 거쳐 연구방향을 결정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내용 및 방법을 구성함

- 2회에 걸쳐 현장 전문가와 제주지역의 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의견조사를 통하여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폭력예방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파악함
- 전문강사와 폭력예방교육 관련 현장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통하여 전문가 의견 조사와 기준의 매뉴얼 분석을 토대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문제점을 수정·보완함
- 본 연구의 연구수행 절차를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제주 지역 및 타 지역의 성 평등 교육 자료 수집 및 분석
- 기존 문헌 연구 및 성 인지 교육 현황 조사
 - 성인지 교육 현황은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

관이 시행결과를 보고한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 (2014년도 자료, <https://shp.mogef.go.kr/>)를 분석함

-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에서 제주지역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함
- 또한 본원에서 실시한 공무원과 교사 219명을 임의 표집한 예방교육 인식조사¹⁾ 결과 일부를 인용함

2) 매뉴얼 분석

-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존의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 매뉴얼을 분석함
 -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등으로 구별하거나 혹은 통합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 매뉴얼 중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동영상 을 제외한 ppt 형식으로 작성된 매뉴얼을 분석함
 - 통합교육용 매뉴얼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각각 주제별로 나누어 최근 작성된 매뉴얼 내용을 분석함

3)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는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 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예방교육 강사로 위촉된 전문강사를 중심 으로 실시함
- 총 2회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내용은 제주지역의 공공기관의 폭력 예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폭력예방교육의 방향, 핵심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를 정리함
- 총 9명의 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 되었고 구성원은 공무원 1명, 교사 2명, 공공기관 대표 1명, 여성폭력 관련 시 설 종사자가 5명이었음

1) 이화진. 2015.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참조

다. 연구 대상 : 공공기관 종사자의 범위

- 본 연구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목적이고 공공기관 종사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혹은 준정부조직 까지 포함하는 개념
- 좁은 의미로서의 공공기관이라 하면,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함
-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은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②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③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 포함됨²⁾.
-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공공기관은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 광의의 개념으로 공공기관은 공법인으로 분류되는 정부 투자 기관, 특수 법인, 그리고 각급 학교를 모두 포함함
-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는 광의의 개념에 의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에 한정하며 본 연구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학생을 제외한 성인에 한정함

2)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쓴 행정학 용어사전, 2010

제 2 장

이론적 배경

- 1.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 2. 폭력발생의 배경
- 3. 폭력의 성인지적 관점

1.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에 대하여 널리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 다만 성인지 감수성은 그것이 적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고 해석되는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
- 왜냐하면 성인지는 성 인식보다는 능동적 지적과정이 강조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쓰여지며 인지의 개념자체가 주체적, 종합적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성인지 감수성도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이를 적극적·실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임
- 인지(認知, cognition)는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를 풀고, 장래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은 지각, 기억 및 정보처리의 정신과정을 의미하며 (Rita L. Atkinson and Ernest R. Hilgard, 1984: 7) 인식(認識)보다는 능동적 지적과정이 강조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 (이정모 외. 2002: 17)
- 최근 인지과학에서 인지개념은 사고나 이성의 의미만 지칭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이성과 감성을 다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마음을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지칭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이정모 · 손지영. 2010; 350)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으로 협의의 개념인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과 광의의 개념인 그 이상의 성평등의식(gender egalitarianism), 실행의지(behavioral or practical intention) 및 성인지력(gender awareness)까지의 성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함 (안상수 외, 2009).
- 다만 본 연구에서 특히 각 부분개념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협의의 의미로 사용함
- 기타 성인지 감수성 관련 의견으로(마경희 · 송인자 · 김효선. 2009)의 성인지성은 정책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성별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 영향을 배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과 기술, 지식을 의미함(여성부, 2009: 23)

- 구체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에 제시된 성인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의미함
- 또한 안상수(안상수 외. 2009)의 성인지성(gender sensitivity)도 성별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식하고, 이러한 차이가 실생활 장면에서 유무형의 차별과 다양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understand)와 지식(knowledge)을 갖추어, 이러한 문제점을 체계적, 비판적으로 분석·숙고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조옥라(조옥라. 2003) 변혜정(변혜정 외 2010) 등에 의하면 성별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란 ① 그동안 사회, 문화적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젠더에 의하여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가를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 ② 기존의 성고정관념에 의하여 억압되어진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 ③ 성고정관념에 의하여 스스로를 구속시킨 면을 감성적으로 느끼고, 그 느낌을 바탕으로 새로운 젠더 의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 ④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젠더의 영역을 느끼게 하는 과정, 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개념설정에 의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젠더 감수성을 정책에 국한해서 설명하거나 젠더 감수성이 정책 실천의도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서 협의의 개념에 속함
-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성불평등을 한국의 성문화의 특성과 배경에 원인이 있음을 분석하고 조직문화와 양성평등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분석함.

2. 폭력발생의 배경

가. 성역할(gender role) 고정관념

- 성역할(gender role)이란 한 개인이 그가 속한 문화권 내에서 여자 또는 남자로 특징지을 수 있는 성격, 태도, 선호경향, 행동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기대치와 고정관념을 포함함
- 구체적으로 성역할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과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사회적 역할이 결합된 개념으로(이은하, 2009)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일종의 신념으로 보기도 함(김영혜, 2004)
- 성역할 태도는 가족과 사회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간의 노동 분담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가사와 육아 등의 집안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였음
- 특히 한국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는 행동의 기준을 성에 두는 전통적인 태도라는 면에서 본다면 이는 한국의 유교적 전통과 일맥상통하고 있음 (김재엽·김희진·최장원, 2010)
- 한편 성역할 정체감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양은별 외 4인, 2014)
-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역할 정체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별에 따른 역할을 인식하고, 자신의 성에 대해 가지게 되는 가치관, 태도, 행동 및 특성 등을 내면화시킨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음
- 성역할 정체감은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남성은 남성의 역할만을, 여성은 여성의 역할만을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남녀의 역할 구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념으로, 일반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도구는 가정적 성역할 고정관념, 직업적 성역할 고정관념,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분류하기도 함 (이은숙·강희순, 2014)

- 이상과 같이 성역할 고정관념은 생물학적인 성으로만 개인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성별에 따라 고정된 역할과 기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자기주장과 지배적 성향 등이 높고 성취 지향적인 특성은 남성의 역할로, 비독립적이며 순응적인 특성은 여성의 역할로 정의됨
-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학습되면서 점차 개인의 특징인 것처럼 인식되는데, 성역할 고정관념은 개개인의 특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변화하는 사회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개인을 성별이라는 특정범주에 예속하고, 성에 따라 개인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그 역할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범주에서 이탈된 개인으로 간주되어 낙인이 가해질 수 있음

나. 폭력 통념

- 폭력통념이란 폭력에 대하여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통념(myth)을 의미함
- 폭력통념은 폭력행위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고 특히 남성이 가지고 있는 폭력통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당연시하거나 폭력의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폭력의 피해자가 원만한 사회성과 적응성을 키우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에서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폭력통념은 물론 피해자 유발 통념까지 형성한다는 점이 중요함
- 폭력통념은 여성에 대한 대표적인 폭력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에서 정당화하기 위한 기제로 사용됨
-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일반인들의 강간 발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성폭력 행위를 남성의 본능으로 합리화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고 성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신념이라 할 수 있음
-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그 사회의 문화적인 조건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통념은 성폭력과 관련된 법적 사회적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성폭력의 억제를 저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함
- 가령 여성에 대한 강간에 대하여 그 원인이 피해자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성경

험, 음란성과 강간에 의한 혐위조작 및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등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는 주장(이석재·최상진, 2001)을 들 수 있음

- 가정폭력의 대표적 통념은 '맞을짓을 했다'거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등 피해자에게 폭력의 책임이 있다는 의식이라 할 수 있음
- 아내폭력에 대한 통념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며 여성의 사회영역으로 규정된 공간인 가정에서 친밀한 관계인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폭력을 해석하는데 있어 개인적 원인과 해결로 접근하려는 시각에서 발생함
- 가정폭력에 대한 통념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오래된 가부장적 신념, 그리고 이를 당연시하는 사회 문화적 배경 등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다. 남성중심적 조직문화

- 크래쉬(Krech et al., 1962) 등은 조직문화를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채택한 물질적 또는 행동적인 모든 양식의 행태라고 정의함
- 여기에는 구성원들의 행동기초가 되고 행동을 다스리는 모든 제도화된 양식과 암시적인 신념, 규범, 가치 그리고 전제들을 포함함
- 새드(Sathe, V. 1983; 31-48)에 의하면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일련의 지식체계를 말함
- 따라서 조직문화는 '공유된 가치, 신념으로서의 문화', 즉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비가시적 요소를 정의하는 유형과 '이야기, 언어, 의식으로서의 문화', 즉 가시적인 요소로 정의되고 인류학적 개념과 관련되며,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변화가 어렵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조직문화는 조직이 만들어낸 것으로 조직의 하위시스템, 즉 내부변수로 볼 수 있음(김강식, 2010).
- 한편 조직 내의 차원에서 유교적 가부장주의는 유교적인 또는 전통적인 인간 관계 질서규범이 유교적인 덕목들 - 예를 들어 효과 바탕이 된 충성심이나 신의, 신의에 대한 배려, 친족유대성, 조화의 유지 등 - 을 중심으로 해서 위계적이고 성별분리적인 이중적 성윤리의 문화가 만들어지며 남성 중심적으로 성의 상품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함

- 물론 조직 내의 위계적인 문화의 형성을 또한 온전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에만 그 원인을 돌리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한국의 양성관계의 위계적인 구조는 그 문화적 기반의 상당히 큰 부분을 유교적 가부장주의의 발현에서 찾을 수 있음(이수자, 1997)
- 따라서 이러한 조직문화인 남성 중심적 가부장문화가 양성평등 의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함
- 결국 성희롱이나 성폭력문제가 근본적으로 여성 비하의식에 기초하고 있어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gender)이나 섹슈얼리티(sexuality) 차원에서 고정관념의 탈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최영애, 2001)

3. 폭력의 성인지적 관점

가. 폭력의 성인지적 정의

- 폭력은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는 그 대상이 된 성폭력³⁾과 가정폭력을 의미 하나 여기서는 광의의 의미로 성희롱과 성매매를 포함함
- 실무에서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성인지적 통합 폭력, 혹은 여성폭력 통합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음⁴⁾
- 이 연구에서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포함한 통합 교육적 측면에서 젠더폭력과 혼용하여 쓰고 있는데 이는 성인지적 측면에서 남성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담고자 한 것임
- 가정에서 폭력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구타, 언어폭력, 인격비하, 경제적 폭력, 방임 등)는 매우 높아 50%의 가정이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불안한 가정이 또 다른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3) 일반 법해석론으로 ‘성폭력’이라 함은 폭행·협박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수단을 사용하거나 항거 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은하, 2015, 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 해석론의 전환형사정책 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103호, 2015 · 가을), 5-31; 최은하, 2015,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형법 제302조)에서 ‘위계’의 해석,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4)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통합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3), 가정폭력 종합 대책 안,

- 성폭력5)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과도하게 발달한 성매매 시장규모와 원정 성매매 등이 한국성문화의 가부장성과 이중성이 국제적으로 노출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와 성매매를 통한 성문화의 왜곡 역시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그런데 성폭력의 개념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범해석과 입법적 해결이어야 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법이론적으로 - 성폭력 즉,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는 발생사적 · 목적론적으로 또는 구성요건 상으로도 폭력의 행사를 통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성폭력에 관하여는 독일형법의 성적 강요죄를 그 기본으로 하여 그 불법성을 논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시도는(신영호 · 최은하, 2015) 성인지의 관점에서 성폭력 개념의 해석론적, 입법론적 전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왜냐하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궁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판결과 아직도 성편향이나 남성중심적인 인식에 근거한 판결은 어떤 것이 있고, 남성 중심적인 것을 성중립적인 것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체계적 해석론 및 입법론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이는 또한 여성폭력관련 판례 중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향후 법해석상, 입법론상 변경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함(윤덕경, 김차연. 2015, 장다혜. 2014)

나. 성인지적 폭력예방의 중요성

- 성폭력의 원인은 성인지력이 부족해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임
-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사회분위기와 가부장적이며 이중적인 성문화는

5)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2002년 9,435건 발생하였던 성폭력 발생건수가 2011년에는 22,034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해자 비율이 2007년 10.4%에서 2012년 11.4%로 상승하는 등 그 변화가 뚜렷하여 사회의 이슈를 집중시키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문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 결과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의 비율도 급격히 늘어 18세 미만 성폭행 가해자가 전체 성폭행 범죄의 11.9%에 이르는 등⁶⁾ 한국 사회문화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매매에 노출되는 시기가 9세까지 내려가는 등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 비행청소년을 포함하여 일반 청소년에게도 성매매가 낯설지 않은 것이 되어가고 있음
-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조사결과 일반 청소년 중 성구매 제의를 받은 경우가 4.9%이며 위기 청소년은 15.1%, 성매매를 하는 친구를 본 경험은 일반청소년이 12.1%, 위기 청소년이 28.7%로 나타남
- 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문제의 위기에 대응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정부에서 척결하여야 할 4대악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음
- 그리하여 그동안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젠더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성인지적 폭력 예방에 그 관심이 주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이 여성에 대한 폭력은 학교폭력과 사회폭력에 연결성을 지니며 한국 사회의 안전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예방을 성인권 교육으로 통합하는 방향도 추진하는 등⁷⁾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성 비하의식에 기초하고 있어 양 성평등의식의 저해를 방지하고, 성(gender)이나 섹슈얼리티(sexuality) 차원에서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으며(최영애, 2001),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폭력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왜냐하면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한 것은 여성 폭력

6) 대검찰청 범죄분석

7)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성인권교육의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3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 - '성인권(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교육' 운영 확대 및 체계적인 통합교육 운영 기반 마련

에 대해 존재하는 고정관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임⁸⁾

- 그러므로 성인지적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 뿐만 아니라 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성인지적 감수성을 함양하여야만 배려와 존중, 소통이라는 폭력예방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와 같은 의식교육을 통해 인식이 개선되고 법과 제도에 대한 공감을 얻고, 그와 같은 공감이 문화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비로소 법과 제도가 정책적, 법적 실효성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같은 인식과 더불어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에 힘입어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강의하여 의식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강사의 육성도 시급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다.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제고

-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남성이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이 깊음
- 우리사회는 조선후기 이후 유교적 사고방식과 가부장적 전통 속에서 성역할이 공과 사 영역으로 분화되고 그 안에서 가부장적 문화가 생성·구조화되어 왔기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매우 심하며, ‘남자답게’ ‘여자답게’ 문화가 매우 강한 경향이 있음
- 그러므로 성차별적 인식구조의 개선없이 우리가 도달해야하는 목표로서 양성평등을 성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역시 한국사회의 성차별적 문화, 이에 확장된 형태인 성차별적 성문화가 반영된 결과와 관련 있음

8)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 유발론, 예를 들어 “아내가 맞을 짓을 했겠지.”, “그 여자의 품행에 문제가 있었겠지.”, “그 여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겠지.”라는 등의 생각은 한국사회가 지닌 성고정관념에 근거한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성폭력 발생율과 성매매 시장의 과도한 발달은 남성의 성적 욕망을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보장하는 한국의 성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고도 볼 수 있음
- 즉, 성폭력과 성매매를 인간 본능(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문제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담론은 남성의 성본능을 과도하게 보장해 주는 성차별적 문화에 근거하고 있음
- 남성의 성적욕망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가부장적인 성문화, 그런 가운데 여성의 성적 욕망을 대상화하는 이중적 성문화의 토대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성을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성매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발생율이 높은 것과 생매매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은 성적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성문화의 문제이며 사회구조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한 인권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처벌하며, 일상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왜곡된 성문화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의식의 개선도 필요함
- 어떤 종류의 폭력이건 폭력 발생이후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임
- 한국인의 성인식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늘린다고 사회가 본질적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님
- 강력한 처벌은 범죄의 발생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중과 배려를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궁극적 목적에는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음
-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존중과 배려와 사회적 합의라는 궁극의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임
- 의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처벌의 강화는 새로운 형태의 성별갈등을 야기 시킬 수도 있으므로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공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사업의 범주에는 법과 제도의 정비, 실태조사, 정책홍보와 더불어 예방교육이 포함되는 바, 대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은 예방교육이므로 이를 전달할 강사가 교육내용과 전달방법에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발생률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별고정관념을 검토하고, 배려와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 전반적인 인권의식 수준을 높이고 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제 3 장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분석

- 1. 폭력예방교육 현황
- 2.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분석

1. 폭력예방교육 현황

가. 전국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황

○ 전국 폭력 예방교육 대상기관 수

-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기관 수는 2014년 말 현재 총 16,800 개소로 각급 학교가 12,143개소로 가장 많고 전체적으로 2013년 16,600개소에서 전년대비 1.2% 증가한 수치임

〈표 3-1〉 전국 폭력 예방교육 대상 기관

(단위 : 개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총계
			초등	중등	고등	특수	대학	소계	
1,576	1,506	1,575	5,934	3,192	2,360	199	458	12,143	16,800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전국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평균 99% 이상을 차지해 의무교육 대상 기관 거의 모두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율이 가장 낮은 98.5%를 나타냄
- 기관유형별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에서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 모든 유형에서 국가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는 높은 실시율을 기록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장 낮은 실시율(94%~96%)을 나타내고 있음

〈표 3-2〉 전국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단위 : %)

구 분	평균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총계	99.2	99.6	99.4	99.4	98.5
국기기관	99.4	99.9	99.8	99.8	98.1
지방자치단체	95.9	96.7	96.3	96.1	94.3
공직유관단체	98.5	99.6	98.9	99.0	96.6
각급학교	99.7	99.9	99.8	99.8	99.3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은 각급학교와 국가기관이 99.9%를 나타내 거의 모든 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96.7%로 약간 낮은 실시율을 보이고 있음
- 성희롱 예방교육의 종사자 참여율과 기관장 참여율에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타 기관보다 낮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3-3〉 전국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

(단위 : 개소, %)

구 분	교육 의무 기관	교육 실시기관			
		실시 기관	실시율	종사자 참여율	기관장 참여율
총 계	16,800	16,727	99.6	88.9	97.0
국기기관	1,576	1,574	99.9	89.6	97.5
지방자치단체	1,506	1,456	96.7	84.0	94.0
공직유관단체	1,575	1,569	99.6	92.2	94.6
각급학교	12,143	12,128	99.9	88.8	97.6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2014년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을 2013년도와 비교하면 대상 기관수를 제외하고

는 교육실시율을 비롯한 모든 점검항목에서 감소함

- 감소폭이 가장 낮은 항목은 교육 실시율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0.1% 감소하였고 고충 상담원의 교육 실시기관은 14.6%로 가장 감소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충 상담원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됨

〈표 3-4〉 전국 성희롱 예방교육 년도별 비교 현황

(단위 : 개소,%)

점검항목	2013년	2014년	증감
대상기관수	16,600개소	16,800개소	200개소▲
교육 실시율	99.7	99.6	0.1▼
종사자 교육 참여율	92.2	88.9	3.3▼
기관장 참여율	98.6	97.0	1.6▼
예방지침 제정률	87.3	84.1	3.2▼
고충 상담창구 설치율	94.0	92.1	1.9▼
고충 상담원 지정률	94.7	92.5	2.2▼
고충 상담원 교육 실시기관	52.9	38.3	14.6▼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전국 성매매 예방교육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고위직 참여율(70.1%)과 비정규직 참여율(81.2%)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위직 참여율이 가장 낮은 기관유형은 각급 학교(62.3%)이고 공직유관단체(91.3%)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냄
- 비정규직 참여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낮은 참여율(70.7%)을 보이고, 각급학교가 가장 높은 참여율(83.8%)을 보이고 있음

〈표 3-5〉 전국 성매매 예방교육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교육 의무 기관	교육 실시기관					
		실시 기관	실시율	종사자 참여율	기관장	고위직 참여율	비정규직 참여율
총 계	16,800	16,703	99.4	88.3	96.5	70.1	81.2
국기기관	1,576	1,573	99.8	89.2	96.8	89.7	79.2
지방자치단체	1,506	1,451	96.3	83.6	94.3	81.4	70.7
공직유관단체	1,575	1,558	98.9	91.9	94.5	91.3	81.5
각급학교	12,143	12,121	99.8	88.0	96.9	62.3	83.8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여성가족부 발표 보도자료(2015. 9. 22) “4대 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포럼 첫해 안정적 출발 보여” 참조

-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율은 전체기관에서 고위직 참여율이 저조한 (68.9%)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보면, 종사자 참여율은 공직유관단체가 91.5%로 가장 높고 지방자치 단체가 83.6%로 가장 낮음
- 고위직 참여율은 성매매와 마찬가지로 각급학교가 가장 낮은 비율(61.2%)을 나타냄
- 비정규직 참여율은 공직유관단체가 84.4%로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가 72.3%로 가장 낮음

〈표 3-6〉 전국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단위 : 개소, %)

구 分	교육 의무 기관	교육 실시기관					
		실시 기관	실시율	종사자 참여율	기관장	고위직 참여율	비정규직 참여율
총 계	16,800	16,702	99.4	88.4	96.7	68.9	82.3
국기기관	1,576	1,573	99.8	88.9	96.4	89.6	77.9
지방자치단체	1,506	1,447	96.1	83.6	94.4	80.4	72.3
공직유관단체	1,575	1,560	99.0	91.5	94.4	89.8	84.4
각급학교	12,143	12,122	99.8	88.5	97.4	61.2	84.2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여성가족부 발표 보도자료(2015. 9. 22) “4대 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포럼 첫해 안정적 출발 보여” 참조

-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은 전체 기관이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고위직 참여율(65.9%)과 비정규직 참여율(79.5%)이 저조한 편임
- 기관유형별 고위직 참여율은 공직유관단체가 89.3%로 가장 높고 각급학교가 56.9%로 가장 낮음
- 비정규직 참여율은 공직유관단체가 84.7%로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가 71.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냄

<표 3-7> 전국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교육 의무 기관	교육 실시기관					
		실시 기관	실시율	종사자 참여율	기관장	고위직 참여율	비정규직 참여율
총 계	16,800	16,549	98.5	87.2	95.7	65.9	79.5
국기기관	1,576	1,545	98.1	88.4	95.5	86.2	78.4
지방자치단체	1,506	1,420	94.3	83.0	94.0	80.1	71.4
공직유관단체	1,575	1,521	96.6	91.3	93.4	89.3	84.7
각급학교	12,143	12,063	99.3	86.4	96.2	56.9	79.5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여성가족부 발표 보도자료(2015. 9. 22) “4대 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포함 첫해 안정적 출발 보여” 참조

나. 제주지역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현황

1) 제주지역 폭력 예방교육 기관수 및 실시율

- 2014년 기준, 제주지역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대상기관 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를 합하여 모두 280개 기관으로 이는 2013년 278개소에 비해 2개소 증가한 수치임

〈표 3-8〉 제주 폭력 예방교육 대상 기관

(단위 : 개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총계
			초등	중등	고등	특수	대학	소계	
28	29	29	112	45	29	3	5	194	280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어린이집, 유치원은 제외하였음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 2014년도 제주지역 공공기관의 폭력 예방교육 실시율은 전체적으로 전국에 비해 약간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기관 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이 96.4%로 가장 낮음

〈표 3-9〉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단위 : %)

구분	합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전국	99.2	99.4	95.9	98.5	99.7
제주	98.7	96.4	100.0	100.0	98.6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유형별 예방교육 실시율

- 유형별 예방교육 실시율에서 모두 제주지역은 전국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율이 가장 낮음

〈표 3-10〉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단위 : %)

구 분		평균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기정폭력
총 계	전국	99.2	99.6	99.4	99.4	98.5
	제주	98.7	98.9	98.9	98.6	98.2
국가기관	전국	99.4	99.9	99.8	99.8	98.1
	제주	96.4	96.4	96.4	96.4	96.4
지방자치단체	전국	95.9	96.7	96.3	96.1	94.3
	제주	100.0	100.0	100.0	100.0	100.0
공직유관단체	전국	98.5	99.6	98.9	99.0	96.6
	제주	100.0	100.0	100.0	100.0	100.0
각급학교	전국	99.7	99.9	99.8	99.8	99.3
	제주	98.6	99.0	99.0	98.5	97.9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2)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 현황

○ 제주지역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 제주지역 성희롱 예방교육은 기본계획 수립, 실시율, 종사자 참여율, 기관장 참여율 등에서 모두 90%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89.5%), 예방지침을 제정(84.1%), 홍보자료 자체제작 비율(28.5%) 등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예방지침 제정 비율은 각급 학교가 93.8%로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가 41.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은 기관유형별로 큰 편차를 보였는데 각급학교가 96.9%인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65.5%에 불과함
- 종합적으로 성희롱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지침 제정, 고충 상담원 지정,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성희롱 대응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표 3-11〉 제주지역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교육 의무 기관	교육실시기관								
		기본 계획 수립	실시 기관	실시율	종사자 참여율	기관장 참석 여부	예방지침 제정	고충 상담원 지정	고충 심의 위원회구성	
총 계	280	97.9	277	98.9	94.7	96.0	84.1	90.6	89.5	28.5
공직유관	29	93.1	29	100.0	93.9	93.1	79.3	93.1	69.0	10.3
지방자치 단체	29	96.6	29	100.0	94.9	93.1	41.4	58.6	65.5	13.8
국기기관	28	96.4	27	96.4	92.3	96.3	66.7	96.3	85.2	11.1
각급학교	194	99.0	192	99.0	95.1	96.9	93.8	94.3	96.9	35.9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제주지역 성매매 예방교육 현황

- 제주지역의 성매매 예방교육은 실시율, 종사자 참여율, 기관장 참석여부 등에서 90% 이상을 차지해 높은 실시율 및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다만 각급학교의 학생 이수율이 39.3%에 그치고 있어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12〉 제주지역 성매매 예방교육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교육 의무 기관	교육실시기관						
		기본계획 수립	실시 기관	실시율	종사자 참여율	학생 이수율	기관장 참석여부	홍보자료 자체제작
총 계	280	97.5	277	98.9	94.2		97.5	27.8
공직유관	29	96.6	29	100.0	94.1		93.1	6.9
지방자치단체	29	96.6	29	100.0	92.4		93.1	6.9
국기기관	28	92.9	27	96.4	92.1		100.0	7.4
각급학교	194	98.5	192	99.0	94.8	39.3	98.4	37.0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제주지역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 제주지역 성폭력 예방교육은 실시율, 종사자 참여율, 학생 이수율, 기관장 참석율 등에서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홍보자료 자체제작은 평균 36.2%로 저조한 편임

<표 3-13> 제주지역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교육 의무 기관	교육실시기관					
		기본계획 수립	실시 기관	실시율	종사자 참여율	학생 이수율	기관장 참석율
총 계	280	97.5	276	98.6	94.3	98.0	95.3
공직유관	29	96.6	29	100.0	93.9		93.1
지방자치 단체	29	93.1	29	100.0	91.6		89.7
국가기관	28	92.9	27	96.4	92.2		96.3
각급학교	194	99.0	191	98.5	95.1	98.0	96.3
							48.7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제주지역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

- 제주지역 가정폭력 예방교육 역시 성폭력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실시율, 종사자 참여율, 학생이수율, 기관장 참여율 등에서 90%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홍보자료 자체제작 비율이 29.5%로 저조한 편임

〈표 3-14〉 제주지역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교육 의무 기관	교육실시기관					
		기본계획 수립	실시 기관	실시율	종사자 참여율	학생 이수율	기관장 참여율
총 계	280	84.6	275	98.2	93.1	94.8	97.5
공직유관	29	82.8	29	100.0	93.6		93.1
지방자치 단체	29	93.1	29	100.0	89.6		93.1
국기기관	28	78.6	27	96.4	92.4		100.0
각급학교	194	84.5	190	97.9	93.7	94.8	98.4
							38.9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3) 제주지역 공공기관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방법 현황

○ 제주지역 예방교육별 방법 현황

- 제주지역의 예방교육 방법은 전체적으로 외부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54.5%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14.3%)이 교육을 하거나 사이버로 실시하는 경우도 (14.2%) 상당수 있었음
- 성폭력(11.6%)과 성희롱(12.3%)이 전문강사 비율이 높고 내부직원에 의한 교육은 가정폭력(26.9%)이 높음
-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2014년에 처음 실시되어 외부강사와 전문강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적고 내부직원이나 시청각 교육의 비율이 적음

〈표 3-15〉 제주지역 예방교육 유형별 교육방법

(단위 : %)

구분	외부강사	전문강사	사이버	내부직원	시청각
총 계	54.5	8.2	14.2	14.3	8.9
성희롱	62.8	12.3	13.4	5.4	6.1
성폭력	55.4	11.6	14.5	11.6	6.9
성매매	58.5	2.9	15.5	13.4	9.7
기정폭력	41.1	5.8	13.5	26.9	12.7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제주지역 기관 유형별 예방교육 방법

- 외부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비율은 각급학교가 58.5%로 가장 높고 지방자치 단체가 38.0%로 가장 낮음
- 국가기관은 외부강사의 비율이 48.1%로 가장 높으나 전문강사(27.8%)와 사이버 교육(18.5%)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 높았음
- 특이한 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청각 교육의 비율이 높아(38.8%) 내실있는 교육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표 3-16〉 기관유형별 예방교육 방법

(단위 : %)

구분	외부강사	전문강사	사이버	내부직원	시청각
총 계	54.5	8.2	14.2	14.3	8.9
국가기관	48.1	27.8	18.5	4.6	0.9
지방자치단체	38.0	7.8	8.6	6.9	38.8
공직유관단체	46.9	14.6	13.8	8.6	18.1
각급학교	58.5	5.0	13.6	18.9	4.1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제주지역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강사가 실시하는 비율은 국가기관(48.1%)과 지방자치단체(44.8%)가 비교적 적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강사 초빙 비율이 가장 낮았음
- 사이버 교육은 국가기관(18.5%)에서 시청각 교육은 지방자치단체(31.0%)에서 높게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표 3-17〉 제주지역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단위 : %)

기관구분	실시 기관수	외부 강사	전문 강사	사이버	내부	시청각	총합
총계	277	62.8	12.3	13.4	5.4	6.1	100.0
공직유관	29	62.1	10.3	17.2	0.0	10.3	100.0
지방자치단체	29	44.8	6.9	10.3	6.9	31.0	100.0
국가기관	27	48.1	29.6	18.5	3.7	0.0	100.0
각급학교	192	67.7	10.9	12.5	6.3	2.6	100.0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제주지역 성매매 예방교육 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강사의 비율이 41.4%로 가장 적고 시청각 교육의 비율이 44.8%로 가장 높아 성매매 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성매매 예방교육은 전문강사의 비율이 특히 적고, 공직유관 기관(17.2%)과 국가기관(22.2%)의 사이버 교육의 비중이 상당 수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함

〈표 3-18〉 제주지역 성매매 예방교육 방법

(단위 : %)

기관 구분	실시 기관수	외부 강사	전문 강사	사이버	내부	시청각	총합
총계	277	58.5	2.9	15.5	13.4	9.7	100.0
공직유관	29	58.6	3.4	17.2	0.0	20.7	100.0
지방자치단체	29	41.4	0.0	6.9	6.9	44.8	100.0
국가기관	27	59.3	18.5	22.2	0.0	0.0	100.0
각급학교	192	60.9	1.0	15.6	18.2	4.2	100.0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제주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강사 비율(31.0%)과 전문강사의 비율(13.8%)이 가장 낮음
반면 시청각 교육(37.9%)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성폭력 예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하는 비율은 공직유관 단체(20.7%)와 국가기관(18.5%)에서 높게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교육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3-19〉 제주지역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단위 : %)

기관구분	실시기관	외부 강사	전문 강사	사이버	내부	시청각	총합
총계	276	55.4	11.6	14.5	11.6	6.9	100.0
공직유관	29	44.8	17.2	20.7	0.0	17.2	100.0
지방자치단체	29	31.0	13.8	10.3	6.9	37.9	100.0
국가기관	27	44.4	37.0	18.5	0.0	0.0	100.0
각급학교	191	62.3	6.8	13.6	15.7	1.6	100.0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 제주지역 가정폭력 예방교육 방법

- 사이버 교육은 공직유관 기관에서 24.1%로 가장 높았고 시청각 교육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41.4%로 높았음
- 특히 각급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내부직원이 실시하는 경우가(35.3%) 많음

〈표 3-20〉 제주지역 가정폭력 예방교육 방법

(단위 : %)

기관구분	실시기관	외부 강사	전문 강사	사이버	내부	시청각	총합
총계	275	41.1	5.8	13.5	26.9	12.7	100.0
공직유관	29	34.5	13.8	24.1	3.4	24.1	100.0
지방자치단체	29	34.5	10.3	6.9	6.9	41.4	100.0
국기기관	27	40.7	25.9	14.8	14.8	3.7	100.0
각급학교	190	43.2	1.1	12.6	35.3	7.9	100.0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현황자료(<https://shp.mogef.go.kr/>).

다.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 인식

- 제주지역 공무원(제주시청, 서귀포 시청 직원, 교사) 217명 대상 예방교육 인식 조사 결과
- 폭력예방교육 방식
- 교직원 및 공무원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를 함께 수강하는 형식의 예방교육이 4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희롱·성폭력만 수강하는 경우(27.6%)로 나타남
 - 네 가지 유형의 예방교육을 각각 따로 수강한다(14.3%)는 비율은 적었음

〈표 3-21〉 폭력예방교육 방식

(단위 : 명, %)

구분	각각 따로 수강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함께 수강	통합교육으로 수강	성희롱, 성폭력만 수강	기타	계
공무원 및 교직원	31 (14.3)	99 (45.6)	26 (12.0)	60 (27.6)	1 (0.5)	217 (100.0)

자료 : 이화진. 2015.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가장 도움이 되는 폭력 예방교육 내용

- 폭력 예방교육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은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21.0%), 폭력의 유형 및 실태(18.7%), 인식변화(14.8%) 순으로 나타남
- 반면, 폭력 관련법(4.6%)이나 폭력과 소통과의 관계(4.3%), 폭력 피해자의 지원내용 및 지원체계(6.1%), 폭력의 후유증(6.8%) 등에 관한 내용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성별로는 남성은 폭력의 유형 및 실태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20.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22.8%)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아 남성은 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그리고 여성은 폭력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교육 초기 단계로 정보 및 지식전달이 예방교육의 주요부분을 차지해 폭력의 개념에 대한 인지와 의사소통 등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의식변화까지 미칠 수 있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임

〈표 3-22〉 가장 도움이 되는 폭력 예방교육 내용

(단위 : 명, %)

		폭력의 원인	폭력의 유형 및 실태	폭력의 개인적·사회적 영향	폭력의 후유증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체계	폭력관련 법	인식 변화	폭력과 소통 관계	계
전체		72 (11.3)	119 (18.7)	78 (12.3)	43 (6.8)	134 (21.1)	39 (6.1)	29 (4.6)	94 (14.8)	27 (4.3)	635 (100.0)
성별	남성	38 (13.8)	56 (20.3)	42 (15.2)	17 (6.2)	52 (18.8)	12 (4.3)	14 (5.1)	35 (12.7)	10 (3.6)	276 (100.0)
	여성	34 (9.5)	63 (17.5)	36 (10.0)	26 (7.2)	82 (22.8)	27 (7.5)	15 (4.2)	59 (16.4)	17 (4.7)	359 (100.0)
연령	20대	12 (11.5)	22 (21.2)	14 (13.5)	6 (5.8)	24 (23.1)	6 (5.8)	2 (1.9)	15 (14.4)	3 (2.9)	104 (100.0)
	30대	21 (10.3)	41 (20.2)	20 (9.9)	15 (7.4)	51 (25.1)	13 (6.4)	8 (3.9)	27 (13.3)	7 (3.4)	203 (100.0)
	40대	29 (12.2)	42 (17.6)	30 (12.6)	18 (7.6)	41 (17.2)	14 (5.9)	14 (5.9)	37 (15.5)	13 (5.5)	238 (100.0)
	50대	10 (11.1)	14 (15.6)	14 (15.6)	4 (4.4)	18 (20.0)	6 (6.7)	5 (5.6)	15 (16.7)	4 (4.4)	90 (100.0)

주: 중복응답

자료 : 이화진. 2015.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폭력예방교육의 적합한 방법

- 폭력예방교육의 적합한 방법에 관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강의(47.5%)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영상 시청(17.8%), 강의위주 교육(16.4%)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다만 남성(6.3%)보다는 여성(12.1%)이 역할극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남성(10.5%)은 여성(6.5%)보다 토론 및 문답식 강의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음
- 연령별로는 40대(24.1%)가 동영상 시청위주의 강의를 다른 연령대보다 더 적

합하다는데 동의하고, 강사의 강의위주 방식은 20대(25.7%)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음

〈표 3-23〉 폭력예방교육의 적합한 방법

(단위 : 명, %)

		동영상 시청 위주	강사의 강의 위주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매체활용 강의	역할극	토론 및 문답식 강의	기타	계
전체		39 (17.8)	36 (16.4)	104 (47.5)	21 (9.6)	18 (8.2)	1 (.5)	219 (100.0)
성별	남성	23 (24.2)	13 (13.7)	43 (45.3)	6 (6.3)	10 (10.5)	0 (.0)	95 (100.0)
	여성	16 (12.9)	23 (18.5)	61 (49.2)	15 (12.1)	8 (6.5)	1 (.8)	124 (100.0)
연령	20대	5 (14.3)	9 (25.7)	17 (48.6)	1 (2.9)	3 (8.6)	0 (.0)	35 (100.0)
	30대	8 (11.6)	10 (14.5)	34 (49.3)	10 (14.5)	6 (8.7)	1 (1.4)	69 (100.0)
	40대	20 (24.1)	14 (16.9)	37 (44.6)	7 (8.4)	5 (6.0)	0 (.0)	83 (100.0)
	50대	6 (18.8)	3 (9.4)	16 (50.0)	3 (9.4)	4 (12.5)	0 (.0)	32 (100.0)

자료 : 이화진. 2015.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폭력예방교육의 적정규모

- 폭력예방교육의 규모에 대한 조사에서는 소규모 토론식 교육(52.1%)와 대규모 집합식 교육(41.1%)이 높았음
- 성별로는 남성(39.4%)보다는 여성(42.4%)이 대규모 집합식 교육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표 3-24〉 폭력예방교육의 적정규모

(단위 : 명, %)

		대규모 집합식 교육	소규모 토론식 교육	강사와 교육생의 일대일 교육	기타	계
전체		90 (41.1)	114 (52.1)	15 (6.8)	0 (0.0)	219 (100.0)
성별	남성	37 (39.4)	49 (52.1)	8 (8.5)	0 (0.0)	94 (100.0)
	여성	53 (42.4)	65 (52.0)	7 (5.6)	0 (0.0)	125 (100.0)

자료 : 이화진. 2015.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폭력예방교육 후 인식변화

- 성폭력 관련 문항인 ‘성폭력을 당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다’ 항목에 ‘아니다’라는 의견이 92.7%로 나타남
-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 90.0%가 ‘아니다’라고 응답해 네가지 유형의 폭력 예방교육 중 인식변화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는 불법이자 인권침해이다’라는 의견에 97.3%가 동의하여 성매매 방지에 관한 인식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25〉 폭력예방교육 수강 후 인식변화

(단위 : 명, %)

	그렇다	아니다	계
성폭력을 당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다	16 (7.3)	204 (92.7)	220 (100.0)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10.0)	198 (90.0)	220 (100.0)
가정폭력은 누구든 신고 가능하며,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이다	206 (93.6)	14 (6.4)	220 (100.0)
성매매는 불법이자 인권침해이다	213 (97.3)	6 (2.7)	219 (100.0)

자료 : 이화진. 2015.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라.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

- 제주지역 공공기관의 폭력 예방교육은 전국에 비해 약간 낮은 실시율을 나타냄
- 교육방식에 있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강사나 전문강사 교육의 비중이 낮고 사이버 교육, 시청각 교육의 비중이 높아 예방교육이 부실할 우려가 있음
- 공무원 및 교사 대상 임의표집 조사결과 예방교육의 정보 및 지식전달이 예방 교육의 주요부분을 차지해 폭력의 개념에 대한 인지와 의사소통 등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의식변화까지 미칠 수 있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제주지역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2.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분석

가. 표준 프로그램 구성

- 현재 제도적인 폭력 예방교육의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에서 표준 프로그램 구성안을 제시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표준강의안을 기본으로 교육대상과 형태에 따라 내용 및 사례 등을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양철수, 2015)
- 표준 강의안의 구성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26〉 여성가족부의 표준 프로그램 구성 안

단계별 핵심목표	핵심내용	세부목차	주요내용	영역 구분
1단계 편견깨기	-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 영향 이해 - 다양한 폭력의 연관성 이해(폭력의 악순환)	1) 총론 2)관점정립	예방교육의 중요성 성문화와 여성폭력 성평등 관점 이해 생애주기별 발달이해	공통 (영역구분과 무관하게 동일)
			발행추이 및 피해유형 후유증 및 특성이해 사례별 위기개입	
			사법처리과정 피해자 지원제도 이해 대상별 대응전략	
			사건발생시 대처요령 문제행동 예방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2단계 인식전환	- 폭력 상황에 바르게 대처하는 태도 - 건강한 성역할 형성, 상호존중 배려	3)실태/사례 4)법/제도		영역별 내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3단계 행동화	- 분노조절, 효과적 의사소통, 평화로운 자기주장 - 갈등, 문제해결	5)Action plan		공통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 표준강의안이 교육 전반에 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제공, 실제 강의는 전문 강사가 교육대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표준강의안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함
-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테마별 추가 강의안을 제작·보급하고 있음
-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영역별·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하고 있음

나. 프로그램 분석대상 및 개요

- 기존 프로그램 내용 분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있는 공공기관 대상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구체적 분석대상 프로그램은 통합교육 강의안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교육 매뉴얼 이고 각 매뉴얼의 내용을 표준 프로그램 구성 단계별로 분석함
- 각 프로그램 매뉴얼을 1단계 편견깨기, 2단계 인식전환, 3단계 행동화에 해당되는 내용을 분류하여 분석함
- 분석대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표 3-27〉 분석대상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주된 내용
통합교육: ‘폭력예방의 통합적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의 필요성 · 여성폭력의 이해 · 발생원인 · 개인·사회적 영향 · 예방과 실천
성폭력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개념과 실태 · 성폭력 발생원인 ·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 · 성폭력 없는 조직사회 만들기
성희롱:‘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개념 · 성희롱 관련법 · 성희롱 판단기준 · 성희롱 통념 및 발생원인 · 성희롱 성립요건 · 성희롱 유형 및 사례 · 성희롱 대처법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 편견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관련법 · 성매매 선택의 자발성의 이면 · 해외에서의 성매매
가정폭력 : No More 가정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새롭게 이해하기 · 가정폭력 다시 이해하기 · 가정폭력 관련법과 지원제도 ·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

*프로그램 유형은 모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ppt 형식으로 작성된 강의자료임

다. 프로그램 내용 분석

1) 1단계 편견깨기

- 통합교육 : ‘폭력예방의 통합적 이해’

〈표 3-28〉 편견깨기 프로그램 내용 : 통합교육

주제	세부목차	주요내용
○ 통합교육의 필요성	· 이전 폭력예방교육	·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에 의한 이중 성규범
	· 여성발전기본법시행(2014.2.14)에 따라 통합교육 실시	· 여성발전 기본법 제25조 2항
	·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 각 법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의 문제점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편화된 지식전달→통합적 관점에서 이해 · 폭력예방을 위한 총체적 실천전략 수립
	· 내용에서의 상호연계성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의 중첩성, 상호 연관성 · 폭력발생원인의 사회구조적 이해 · 폭력의 개인적, 사회적 결과 이해
○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통합교육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다수가 여성, 폭력의 중첩성, 상호 연관성에 대한 통합적 이해 ·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p>·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안순환의 고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여성의 절반은 가정폭력 피해자 · 성매매 여성 2명 중 1명 성폭력 경험 ·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피해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은 성매매 피해의 경계선상에서 살아가게 됨에 따라 재유입예방을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여성폭력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p>· 성폭력 해외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性)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원하지 않는 언어적·신체적인 성적 강제행위를 의미, 사회적·신체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최근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심각한 범죄로 인식 →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세로 변화 <p>· “성폭력은 기본 품위와 인간성을 모욕하는 범죄이며, 우리 모두가 연관된 문제이고, 사랑하는 어머니나 아내, 딸, 아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오바마 – 미국 대학생 성폭력과의 전쟁 선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p>· 성매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으로 일반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기해지는 의도된 폭력이 대부분임 · 가정폭력 발생률 45.5%, 2가구 중 1가구에서 부부간 가정폭력 발생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음(가정폭력실태조사, ‘13. 여성가족부) · 성매매특별법 시행 10년에도 불구하고, 성접대 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당연한 관행으로 남아 있으며, 처벌을 피해 이루어지는 해외원정 성매매, 변종 성매매 등 한국은 여전히 인권 후진국으로서의 태이틀을 벗지 못하고 있음
○ 여성폭력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폐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공간 내에서 · 사회적 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랫동안 지속 · 관습적으로 방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억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사회적 지위 · 권력관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의 후유증 · 생존권 박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의 상호 연관에 따른 영향 :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폭력으로 대물림 되는 가정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가정폭력 노출로 인해 축적된 긴장 요인은 청소년의 폭력과 일탈행위의 원인 ·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은 청소년의 폭력행동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가정에서 지란 경우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므로 폭력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 필요 	
○ 발생원인과 개인·사회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곡된 통념과 사회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및 상황 비난 · 폭력을 여성의 치부로 전환 :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갖게 만듬 · 폭력을 사소한 개인적 문제로 취급 · 폭력의 실제 양상을 축소·외면 : 집요한 합의 강요에 시달리는 피해자 가족 · 이로인해 피해자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가져오게 하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는 폭력을 지속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인권의식과 이에 기초한 관습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인권의식 : 취약 대상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과 일상화된 폭력 문화 · 오래된 불평등,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약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폭력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 자신이 “폭력피해자”임을 증명해야만 하는 과정을 겪고 있음 · 가해자를 재대로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 재범방지조치 미흡 · 검거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성범죄자가 지난 5년간 9000여명 · 낮은 신고율과 기소율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은 40% 이상
○ 여성폭력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의 파급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은 또 다른 폭력의 씨앗’, 인권·생명권 문제로 인식해야 폭력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 절망, 분노, 생활부적응, 좌절, 고립감, 심리적 위축 등 ·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 피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극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가해자) : 사회적으로 고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 삼진아웃(동일범) 구속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신상공개 등 관리 강화 성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 성매매 업소 건물주 처벌 및 재산 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영향 : 사회적 불안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에 관해 일반 성인과 중고생 집단 모두 50%이상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대부분의 여성·아동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낌(2013.8. 안전행정부) 예방이 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감소와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여성폭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임

○ 성매매 : '성매매에 관한 편견, 그리고 편견깨기'

〈표 3-29〉 편견깨기 프로그램 내용 : 성매매

주제	세부목차	주요내용
○ 성매매에 관한 편견		
○ 201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		
○ 사회의 흐름에 따라 성매매 업소들이 다변화 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증가, 변종 성매매 업소, 유흥주점 증가, 해외 성매매 등 	
○ 성매매 합법화되는 것이 낫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사례를 통한 성매매 합법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인구 스웨덴의 9배, 성매매 종사자수 스웨덴(전면금지)의 60배(2012년 추정치), 성매매 합법화로 인해 오히려 여성의 빈곤심화, 인신매매 활성화 및 성범죄 증가, 성폭력 대처에 대한 사회적 비용증가, 합법화와는 별개로 여전히 불법 성매매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저렴한 비용등) 됨
○ 성매매는 왜 불법인가?(왜 성은 돈으로 거래되면 안 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을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는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것을 사고 팔수 없음. 장기매매의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장기를 팔고 샀다 하더라도 용인되지 않음 성매매를 금지하거나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사회적 성풍 속성도덕을 보호하는 것임(사회적 법의)

○ 가정폭력 : No More 가정폭력!

<표 3-30 > 편견깨기 프로그램 내용 : 가정폭력 프로그램

주제	세부목차	주요내용
○ 교육목표	• 가정폭력 본질 이해와 자기 인식 변화	
	• 가정폭력 정책과 공공 기관의 역할 인지	
	• 가정폭력 예방 및 개 입방법 습득	
○ 가정폭력 새롭게 인식하기	• 가정폭력 국가가 개입 해야 할까요?	
	• 가정폭력 파급력	· 가정폭력은 또 다른 폭력의 씨앗이며 중요한 사회문제 · 성매매, 성폭력, 학교폭력, 부부폭력 등과 연관되어 있고 자살이 나 살인, 노인학대, 부부폭력 아동학대 등을 유발함
	• 가정폭력을 위한 변명	· 문화 : '아이들은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워라' · 전통 : '가족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 종교 : '남편이 아내를 마구 대해도 된다'
	• 국정과제 : 4대 사회악 근절	· 모든 사회악의 공통점 : 인식부족, 가족파괴, 생명위협, 심한 후유증
	• 가정폭력 방지 종합 대책	· 비전 : 가정폭력 방지를 통한 건강한 가족 가치 구현 · 목표 : 2017년 까지 가정폭력 재범률 20% 감축 · 예방 : 예방교육 확대 및 건강한 가족가치 정착을 위해 → 부모교육 및 행복 가족캠프 운영, 학부모 교육 강화 · 보호 :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 이혼과정 중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 교섭권 제한, 직 업훈련비 지원 등 자립·자활 강화 · 집행 : 초기대응 강화 및 가해자 엄정처벌을 위해 → 경찰관 현장출입 조사와 긴급임시조치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경찰관 출동 의무와 전문 상담가 동행
	•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이후의 변화	· 지속적인 처벌 단속 강화로 구속조치된 가정폭력 사범 2배 증가
	• 가정폭력 예방 : 폭력가 정을 다시 건강가정으로	• 심각한 폭력가정 : 가족 내 성폭력 및 칼 등으로 협박, 신 체적인 상해, 통제 · 112 신고 · 가정폭력 사건 처리 · 긴급피난처 및 보호시설 입소 ·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 프로그램 참여 및 지속 상담 • 중한 가정폭력 : 폭언, 폭행, 위협하기, 감시, 물건던지기 · 112 신고 및 가정폭력 사건처리 · 1366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연계(수강명령) ·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참여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지속상담 · 의료적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폭력가정 : 경제적 방임, 소리지르기, 외면, 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66·가정폭력상담소 가족 상담, 심리상담 · 부모교육, 자녀교육, 가해자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 갈등해소 프로그램 참여 건강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존중하기, 대화시간 갖기, 정기적인 가족회의, 가족과 함께 보내기 · 예비 부부 및 신혼기 가족 교육 · 부모교육, 부부교육
• 가정폭력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간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관계에 서는 발생하지 않음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간의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일어남
• 가정폭력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폐되는 폭력 : 사적공간 내 발생, 사회적인 둑인 반복되는 폭력 : 오랫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 중복되는 폭력 : 배우자, 자녀폭력, 부모폭력
• 순환되는 폭력 : 세대간 대물림	
• 가정폭력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폭력 : 폭행·감금, 신체억압, 행동자유 구속 언어정서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설·폭언·가족비난, 심리적 괴롭힘, 외부 관계 단절, 일거수·일투족 감시 성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사이결정권 침해, 부부강간, 강제 불임 및 낙태, 자녀에 대한 성학대 경제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방임유기, 경제활동 통제, 지출 목록 감시, 양육비 미지원
• 가정폭력 피해 후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 자살시도, 문제해결능력부족, 과도한 방어행동, 우울, 무력감, 두려움, 자존감 저하, 절망, 등 이동 : 학교폭력, 총동지지력 부족, 폭력 행동 모방, 가출, 공격성, 우울, 학교생활 부적응, 위축, 문제해결 능력 부족 등
• 가정폭력 가해자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자의 주요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행한 성장과정, 문조 조절의 어려움, 관계 형성의 미숙, 통제하려는 행동,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시각, 과거 폭력 피해 경험
• 가정폭력의 또 다른 얼굴 – 아동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 및 가족 갈등 이주여성 학대 : 가정폭력 상담건수 매년 증가, 이주여성의 통제는 외출금지, 여권 등 신분증 뺏기 등 노인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학대 유형별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정서적 학대 ②신체적 학대의 경우, 아들 > 배우자 > 딸 · 노인학대 장소 : ①가정 ②생활시설

2) 인식전환

- 성폭력 예방교육 :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표 3-31> 인식전환 프로그램 내용 : 성폭력

주제	세부목차	주요내용
○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성폭력의 관성폭력의 범위	·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을 의미,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함
	· 성폭력의 판단기준	· 성폭력 :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기해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의미 · 성추행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행위로 간음 이외의 성적 기해 행위 · 성희롱 : 행위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
○ 성폭력의 실태	· 성폭력 발생건수 추이, 재범률 및 가해자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 와의 관계, 발생시간	·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음
	· 성폭력의 후유증	· 우울증, 수치심, 대인기피증, 자살, 학업중단, 거식증, 폭식증
○ 성폭력 발생원인	·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	·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 ·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 '밤늦게 돌아다녔다' 등 ·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여 또 다른 성폭력의 원인이 됨
	· 해외사례를 통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 미국 : 관련법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은 성적접촉은 물리적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폭력으로 인정 · 독일 : 피해자가 행위자의 공격에 대하여 보호 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면 저항하지 않거나 저항을 포기한 경우에도 강간죄를 인정함
	·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국내의 현실	· 피해자가 성인이거나 기해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구속수사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기해자나 주변사람들에 의한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기소율, 기소건수 중 집행유예 비율은 40% 이상 · 법정형보다 낮은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의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된 성인식 ·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 ·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 성폭력의 관련법과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관련 법·제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 · 성범죄자 치료감호 및 전자발찌제도 도입 2007 · 아동성추행 살인점 사형제도 도입 2008 · 화학적 거세 도입 음주감경 배제 2011 · 성범죄 교직원 처벌강화장애인 대상 성 범죄 형량 강화 2013 · 형법,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대폭 개정·시행 · 친고죄 폐지, 남성도 강간의 객체에 포함
○ 성폭력 범죄자 처벌 및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성범죄자일몰) – www.sexoffender.go.kr · 우편고지 :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500만 가구 대상 · 게시판 게시 : 읍면동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PC방, 멀티방, 경비업 등 위업제한 대상 시설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자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범우려가 있는 경우 약물치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발찌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범우려가 있는 경우 약물치료 대상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발찌 부착
○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한 정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 보호강화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활용확대 및 무료 법률지원 연차적 확대, · 진술조력인, 법률조력인제도 등 피해자 중심 조사환경 구축 ②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확충 ·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의료, 상담, 법률지원,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설치 운영 ·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등 특성별 지원시설 확대 및 지원 강화 ③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방과후 돌봄 시각지대 해소 및 범부처 통합 돌봄서비스 체계구축 ·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한 위험환경 개선 ④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국가 및 지자체, 공공단체 등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 확대 ·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지원·관리 체계 내실화
○ 성폭력 피해 지원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긴급전화 1366 :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 성폭력 상담소 : 상담지원 ·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 : 의료지원 · 무료법률구조기관 : 법률지원 법률상담 및 민·형사 등 소송 대리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수사지원, 성폭력 피해자 진술지원, 2차 피해 방지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보호·사회복귀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확대 	

○ 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

〈표 3-32〉 인식전환 프로그램 내용 : 성희롱

주제	세부목차	주요내용
○ 성희롱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xual harassment : 성적 괴롭힘, 성희롱 - 업무상 위계, 위력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적인 언동으로 괴롭히는 것 - 업무상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립됨 	
○ 성희롱 관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 	
○ 성희롱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고려 -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 	

	<p>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가 고려, 일반인이 피해자 입장에 처했더리도 성적 불쾌감, 모욕감을 느낄 만했는지가 객관적 기준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판례 - 주관적인 느낌 + 제3자도 동일한 느낌 = 성희롱 	: 피해자와 같은 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의 관점을 객관적 기준으로 채택
○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여부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의도, 고의성 여부이다? - 명확한 거부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 성희롱을 당한 남성은 아직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성희롱? 성추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언동 중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성희롱이 발생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통념 - 사회문화적 규범 - 조직 내 집단문화 - 조직 내 힘의 권력관계 - 습관의 무서움 - 성희롱은 우리사회 왜곡된 성 담론과 성 차별적인 직장문화에서 비롯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자답다 vs 여자답다 ·성별화 된 성차별적인 이중적인 성 통념 ·개인의 신념체계에서 성 통념 수용 ·자연스레 정상적이라고 인식하는 규범 ·연애문화, 놀이문화, 술 문화 ·성별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가부장문화 ·상하관계에서의 일차려문화 ·행위자의 입장을 지지·강화하는 집단문화 ·행위자는 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권력관계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
○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은 습관 : 언어, 행동 - 평소엔 괜찮은데... 술 마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술을 핑계로 심지 말 것, 술로 인한 실수에 관대하지 않기
○ 입장 바꿔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녀와 나무꾼 - 서동요 : 서동이의 만행? - 나에게 장난이었지만 상대방에겐 폭력일 수 있다 - 나는 선의였지만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녀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유는?, 선녀 입장에서 동화 다시쓰기
○ 성희롱 성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행위자와 피해자, ②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③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성희롱의 유형	-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기를 한 행위
	-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핸드폰 포함)
	- 그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	
○ 성희롱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에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묻고, 수고한다며 엉덩이를 치거나 하리를 잡는 등의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줌 -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기슴을 만져도 되느냐고 묻는 등 - “아이 하나 더 낳아, 오늘밤 집에 가면 이불 속에서 신랑에게 하나 더 낳자고 해” - 업무 협의를 마친 후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에는 클림트의 ‘키스’와 노골적으로 성적인 내용이 담긴 글이 있었음 	

○ 성매매 : ‘성매매에 관한 편견, 그리고 편견 깨기’

〈 표 3-33 〉 인식전환 프로그램 내용 : 성매매

주제	세부목차	주요내용
○ 성매매는 그녀들의 선택이다 (자발성의 이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유입 시기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 청소년의 60%이상이 소녀이고, 그 가운데 절반정도가 성매매를 경험 - 명백한 취업사기 또는 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등 사리판단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꼬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함. 폭력을 동원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포주 폭력배·인신매매범 등 공급책이나 중간 매개체들로 인해 성매매 확산 - 가출 청소년의 50%이상이 조건만남이나 채팅을 통해 성매매로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성매매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폭력 악순환의 결과 • 청소년 : 성장기 피해경험 → 가출 → 숙식제공, 금전적인 문제 → 성매매 유입 • 성인 : 가정폭력, 이혼 등 → 지인이나 친구 소개 → 생계수단, 금전적 문제 → 성매매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여성 2명 중 1명 성폭력 경험 - 이로인해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된 자' '성매매 피해여성'이라고 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 성매매 여성 연쇄자살 - 빚 때문에 자유 박탈당한 성매매 여성 - 탈출, 그러나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업주들의 협박과 횡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취구조로 인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 굴레 속에서 나올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라이자각종 벌금, 선불금, 성판매, 구조적인 외상지출 등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에게 주어지는 돈은 극히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경험이 업주나 성구매자들에게 비밀보장의 안전장치가 되고, 업소 잔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인관계의 폭이 줄어, 사회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차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에 대한 좌절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성매매를 그만둘 수 없게 만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유입 경제적 문제,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감당하기 어려운 빚, 세상에 대한 두려움
○ 해외에서의 성매매는 괜찮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사회가 한국을 보는 시각 ·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남성은 여전히 동남아와 태평양 섬 지역에서 아동 성매수 관광 수요의 원천 · 유엔 미약 범죄국(UNODC) 올해 내부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메콩강 근처 4개국(태국·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아동 성매수의 주요 소비자 · 국제시민단체 액팻(ECPAT) : 한국은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원천국가 · 프랑스 시민단체 아플(A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성매수 남성 2명 적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는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무서운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며 외국어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다'라는 허위광고로 유인 : 시체업자가 다른 나라로 인신매매 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성매매 명백한 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성매매 또한 인터넷 성매매 협행법으로 똑같이 처벌 · 해외 원정 성매매나 인터넷 성매매 역시 협행 국내법 적용 · 개정된 여권법으로 성구매자 여권 발급 제한

○ 가정폭력 예방교육 : No More 가정폭력!

〈표 3-34〉 인식전환 프로그램 내용 : 가정폭력

주제	세부목차	주요내용																
○ 가정폭력관련 법과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관련 법 주요 변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 • 기해자 처벌 과정 이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기</th><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997</td><td>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6</td><td>법의 목적 개정 : 건전한 가정 육성 → 피해자 보호와 지원</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9</td><td>전국 위기 전화 설치 신설 : 여성긴급전화 설치 운영 마련</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0</td><td>피해자 지원 강화 : 아동관련 비용 지원 확대</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0</td><td>피해자 지원 강화 : 긴급구조 시 경찰 동행 요청 가능</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2</td><td>피해자 지원 강화 : 사법 경찰의 신고 현장 출입 가능</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3</td><td>피해자 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직업 훈련비 지원 추가, 상담소 종사자 동행 요청,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조사, 현장조사 거부 시 행위자에게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지원 : 24시간 전화상담(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자 치료 및 지속 상담, 기해자 교정치료 상담 - 법률지원 : 소송대리 지원, 소송비용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1577) - 주거지원 : 자녀와의 동반입소, 자립지원, 그룹홈 지원, 장단기 보호시설 (6월~2년) - 의료지원 :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자체 및 지역상담소 통해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 응급 및 임시조치, 출동 의무화, 폭력 가해자에 대한 초동 조치 - 검찰 : 재범 우려 시 기해자에 대한 퇴거격리, 유치장 구치소 유치 청구 가능 - 법원 : 피해자 접근 및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치료, 손해배상명령 등의 보호처분 명령 가능 	시기	내용	1997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06	법의 목적 개정 : 건전한 가정 육성 → 피해자 보호와 지원	2009	전국 위기 전화 설치 신설 : 여성긴급전화 설치 운영 마련	2010	피해자 지원 강화 : 아동관련 비용 지원 확대	2010	피해자 지원 강화 : 긴급구조 시 경찰 동행 요청 가능	2012	피해자 지원 강화 : 사법 경찰의 신고 현장 출입 가능	2013	피해자 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직업 훈련비 지원 추가, 상담소 종사자 동행 요청,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조사, 현장조사 거부 시 행위자에게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기	내용																	
1997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06	법의 목적 개정 : 건전한 가정 육성 → 피해자 보호와 지원																	
2009	전국 위기 전화 설치 신설 : 여성긴급전화 설치 운영 마련																	
2010	피해자 지원 강화 : 아동관련 비용 지원 확대																	
2010	피해자 지원 강화 : 긴급구조 시 경찰 동행 요청 가능																	
2012	피해자 지원 강화 : 사법 경찰의 신고 현장 출입 가능																	
2013	피해자 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직업 훈련비 지원 추가, 상담소 종사자 동행 요청,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조사, 현장조사 거부 시 행위자에게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신고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교육과 보호담당 기관 종사자 및 기관장 · 아동, 노인, 장애인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기관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이나 센터장,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관련 종사자 ·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즉시신고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함 - 비밀누설 금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가정폭력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해서는 안됨 - 누구든지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신고 후 처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 신고 → 경찰출동 → 가해자, 피해자 분리 → 상황진술·초기상담(피해자의 욕구파악, 시설입소 및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긴급전화 1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일 24시간 위기개입 상담(초기지원), 긴급피난처 운영(7일 이내 긴급보호), 지역관련 기관 연계(쉼터, 법률, 의료 등) - 가정폭력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9:00~18:00 정기적인 상담,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정기관),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지정기관), 부부 및 집단 상담, 지역 관련기관 연계(쉼터, 법률, 의료 등)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상담법률·의료지원 서비스, 자녀와 함께 생활(의식주 무료 제공), 학습지원 (비밀 전학 등), 자립지원 (취업연계, 직업훈련 등) - 기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노인보호 전문기관(1577-1389),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

3) 행동화(Action Plan)

○ 통합교육 : '폭력예방의 통합적 이해'

〈 표 3-35 〉 행동화 프로그램 내용 : 통합교육

주제	세부목차	주요내용
○ 일상에서의 예방과 실천방안	- 여성폭력을 멈추기 위한 일상에서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수성 제고 · 여성폭력의 뿌리가 사회문화적인 차별과 불평등에 있음을 이해 · 약자인 피해자는 피해에 대하여 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미리 해아려 줄 것 · 피해사실이 있다면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기, 들었다면 같이 해결법을 찾고 공감해주기
	- 성차별 민감성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과 여성, 다르지만 같은 인격체 · 서로의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차이가 차 별로 이어지지 않는지 일상생활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
	- 개인에서의 실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Q(소통지수)&NQ(공존지수) · 당신이 행동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는지 자세히 바라보기 · 소극적 변화 : 관계에서의 조심스러움 인식 · 적극적 변화 : 상대를 위한 섭세한 배려 "행동하기 전에 미리 상대의 허락을 구하기"
	- 가정에서의 실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구성원 내 연령, 성별 차이가 있지만 모두 존중 받아야 할 개인
	- 학교에서의 실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이 최우선, 체계적인 시민 교육 실시 · 청소년 : 성평등의식 제고, 관계에서의 소통과 배려, 건강한 성의식 등 · 지역사회 : 평생교육으로서의 부모교육, 지역 사회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보 제공
	- 조직과 회사 내에서의 실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발생시 신고 및 적극적 조치, 피해자 보호 강화, 예방을 위한 교육과 토론 문화 정착 · 평등실현 : 조직 구성원 내 직위, 권한, 업무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 받아야 할 개인
	- 안전한 사회를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개선 :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기 · 안전망 강화 : 기해자 무관용 원칙, 피해자 지원강화,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예방교육 : 성인지 감수성 향상, 통념과 편견깨기, 신뢰와 존중관계 형성
	- 인식의 전환 관련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락받지 않았다면 멈춰어야 합니다. · 부서진 TV는 고칠 수 있지만, 부서진 마음은 고칠 수 없습니다. · 누군가는 멈춰야 합니다. 수많은 '나'로부터 시작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 예방관련 슬로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여성폭력 근절의 출발입니다. · 단 한번도 폭력, 우리 모두의 책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실천하세요.

- 성폭력 : '아이와 여성의 안전한 대한민국'

< 표 3-36 > 행동화 프로그램 내용 : 성폭력

주제	세부목차	주요내용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현황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 지역사회 아동 여성 모호 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전국 총 244개)
	- 아동안전지도 제작	·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한 위험환경 모니터링 개선
	- 나홀로 아동 돌봄 서비스	· 저소득 맞벌이 가정 만 12세 이하 자녀 시간제 돌봄 확대 · 돌봄 인프라 취약지역 지역아동센터 확충
○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내실화 : 의무대상 기관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확대	- 전국민 대상 생애 주기별 교육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 예방교육 방법의 다양화,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체험형 교육기관 확대	
○ 공공기관에서의 성 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 개인차원	· 인권침해, 신체적 침해, 심리정신적 부작용, 업무 능력 저하
	- 기관차원	· 조직 생산성 저하, 인적·물적 자원 손실, 적대적 근로환경 조성, 국민신뢰감 저하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관의 책임이 중요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 필수 추진사항	- 대상	·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공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학교
	- 절차	· 교육계획 수립 : 성폭력 예방 교육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 교육실시 : 기관장 고위직 및 학부모(학교) 참석독려 · 추진실적 보고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추진 (shp.mogef.go.kr), 실적입력 (다음연도 2월말까지) · 교육실적 공개 : 부진기관 언론 공표, 기관정 및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홈페이지 공개 등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예방 교육지침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음

○ 성폭력 없는 조직 과 사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제로를 위한 방안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법적 처리절차 - 사건발생 시 기관 업무처리 담당자 업무수칙(피해자 대상) - 사건발생시 가해자 징계 및 처벌 	<table border="1"> <tr> <td>성 인 지 감수 성 훈련</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 범죄임 을 인식한다 ·성별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한다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한다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다 </td></tr> <tr> <td>자기 포 현과 소 통훈련</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No'는 'No' 로 수용한다 ·동료, 상사에게 'No'라고 말하기 어 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평소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과 생 각을 표현한다 </td></tr> <tr> <td>신 뢰 관 계 구축 과 교육</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한다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편안한 직장 균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td></tr> <tr> <td></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내 보호체계 구축 : 피해자 안전과 근로권 보 호 최우선, 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매뉴얼(피 해사실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등) ·건강한 직장 문화 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가 존재하는지? 소통은 민주적이고 원활한지? 회식을 강요하지 않는지? 술 먹기는 강요하지는 않는지? 성차별적 보직, 승진은 없는지? </td></tr> </table>	성 인 지 감수 성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 범죄임 을 인식한다 ·성별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한다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한다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다 	자기 포 현과 소 통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No'는 'No' 로 수용한다 ·동료, 상사에게 'No'라고 말하기 어 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평소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과 생 각을 표현한다 	신 뢰 관 계 구축 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한다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편안한 직장 균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내 보호체계 구축 : 피해자 안전과 근로권 보 호 최우선, 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매뉴얼(피 해사실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등) ·건강한 직장 문화 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가 존재하는지? 소통은 민주적이고 원활한지? 회식을 강요하지 않는지? 술 먹기는 강요하지는 않는지? 성차별적 보직, 승진은 없는지?
성 인 지 감수 성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 범죄임 을 인식한다 ·성별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한다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한다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다 									
자기 포 현과 소 통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No'는 'No' 로 수용한다 ·동료, 상사에게 'No'라고 말하기 어 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평소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과 생 각을 표현한다 									
신 뢰 관 계 구축 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한다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편안한 직장 균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내 보호체계 구축 : 피해자 안전과 근로권 보 호 최우선, 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매뉴얼(피 해사실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등) ·건강한 직장 문화 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가 존재하는지? 소통은 민주적이고 원활한지? 회식을 강요하지 않는지? 술 먹기는 강요하지는 않는지? 성차별적 보직, 승진은 없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일은 전문기관에 신고 하는 것 ·신고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작 ·절차 : 전문기관에 상담 및 신고 – 경찰수사 – 검찰 조사 – 법원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태도 :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밝혀줌 피해사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한 내용을 그래도 믿어줌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함 ·사건 발생 인지 후 즉시 신고 : 피해자 안전, 보호 최우선 최대한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사건 해결 ·피해자 상담 시 유의사항 : 상담 시작 전 비밀 보장 약속,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 ·피해자의 안전(추가적 성폭력이나 위협)을 파악하 고 가해자와 분리하여 보호조치 ·왜곡된 인식이 생기거나 자신에 대한 비하를 대비 한 적절한 교육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죄에 대한 공무원 징계기준 강화 및 엄중 적용 : 고의가 있는 성범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 										

		<p>더라도 파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징계처분(강등, 정직, 감봉, 견책)시 일반적인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및 승급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 제한 · 공무원 징계령의 성범죄 징계기준을 공직유관기관 까지 확대
--	--	---

- 성희롱 :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

< 표 3-37 > 행동화 프로그램 내용 : 성희롱

주제	세부목차	주요내용
○ 성희롱 피해 시 대처	-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 · 피해당한 경우 문제를 공론화 시킨 후 해결 노력 : 기관(직장)에 성희롱 고충 신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 기관(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사건조사 및 처리 · 자체 예방지침에 따른 사건 접수 및 처리 : 신고접수 및 상담, 사건조사 및 처리(행위자 제재 혹은 징계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방지대책 추진
○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 상대가 괜찮을 거라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 수 있다	
	- 의사 표현이 서툴러서 그랬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 술 때문에 실수했다는 핑계는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는다	
	- 행위자가 된 경우 상대방의 불쾌감인 거부의사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 공적인 업무와 시적인 업무를 구분한다	
	- 상대방의 의견·인격을 존중한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 언동을 조심하고 회식 자리 등에서 원하지 않은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해 시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하 직원에게 ‘딸 같다’, ‘아들 같다’고 하면서 안마를 요구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기관에서 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희롱! 5초만 생각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기 전에, 쳐다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 가정폭력 : No More 가정폭력!

〈 표 3-38 〉 행동화 프로그램 내용 : 가정폭력

주제	세부목차	주요내용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전환 	나로부터의 변화, 가정폭력 본질파악, 피해자에 대한 공간과 이해, 폭력의 정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부부교육·부모교육 이수,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법체계 및 지원 시스템 이해, 신고처리 과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 	네트워크 활용, 신고의무자 역할 수행, 폭력 피해에 대한 적극적 개입, 정보파악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당신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차원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개인 삶의 변화, 관련 정보 파악,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 건강한 나의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차원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가정폭력 방지정책 수립, 가정폭력 예방 예산 확보, 가정폭력 관련기관 지원, 폭력사례 지속적 모니터링,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가정폭력 심각성에 대한 지역 사회 주민 홍보

라. 기존 프로그램 매뉴얼의 특징 및 시사점

- 통합교육 및 주제별 매뉴얼에 단계별 핵심목표 내용 포함여부
 - 주제별 매뉴얼을 단계별 핵심목표에 해당되는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 편견깨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통합교육에 가장 많이 있었고 성매매와 가정폭력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었음
 - 인식전환에 해당하는 내용은 통합교육을 제외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모든 주제별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었고 주제별 매뉴얼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 인식전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폭력의 개념, 법과 지원체계, 실태등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임
 - 행동화(Action Plan)에 해당하는 내용은 통합교육,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매뉴얼에 있었고 성매매 매뉴얼에는 해당내용이 없음

〈표 3-39〉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내용 분석

단계별 핵심목표	주제별 매뉴얼
편견깨기	• 통합교육 : ‘폭력예방의 통합적 이해’
	• 성매매: ‘성매매에 관한 편견, 그리고 편견 깨기’
	• 가정폭력: No More 가정폭력!
인식전환	• 성폭력: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 성희롱: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
	• 성매매: ‘성매매에 관한 편견, 그리고 편견 깨기’
	• 가정폭력: No More 가정폭력!
행동화	• 통합교육: ‘폭력예방의 통합적 이해’
	• 성폭력: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 성희롱: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
	• 가정폭력 : No More 가정폭력!

- 통합교육,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주제별 매뉴얼에 교육의 핵심 목표 구성요소가 균형적으로 들어있지 않아 단독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폭력의 유형이나 개념, 관련법 등 지식전달 내용 위주의 매뉴얼이라 교육 대상자들이 지루하고 식상함을 느껴 교육의 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음
-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내용이 부족함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과의 관계 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소통과 공감능력 향상이 중요함
 - 특히 교육 현장에서 폭력예방에 관한 일방적 지식전달이 아닌 성별차이에 대한 감수성 향상 능력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그러나 기존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내용 분석결과, 인간관계에서 타인과의 감정을 교류하는 공감능력, 자기표현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신뢰관계 구축에 관련된 내용은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이외에는 거의 없음

3.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 및 프로그램 방향

가.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 제주지역 공공기관의 성인지 교육의 현황파악과 개선점을 진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은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예방 교육 전문 강사로 한정함
- 전문 강사 집단은 구체적으로 제주지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 이거나 교사가 주요 구성원임
- 기타 연구에 참여한 전문 강사는 공무원 혹은 퇴직한 공공기관 종사자나 교사로 구성됨
- 주요 연구 참여자의 특성 및 교육 분야는 아래와 같음

<표3-40>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대상

사례	소속기관 유형	분야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 성희롱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3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가정폭력
4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가정폭력
5	교사	성폭력, 성매매
6	교사	성폭력, 성매매
7	사회복지재단	성폭력, 성희롱
8	공무원(퇴직)	성매매
9	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 조사 형식은 초점집단인터뷰(FGI)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연구자가 미리 질문지를 만들어 대략적인 조사내용을 선정하였음
-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한 구성원은 모두 9명 이었고 면접시간은 각각 2시간 정도에 걸쳐 이루어졌음
- 조사내용은 주로 현장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제도적 개선점이나 프로그램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 등으로 구성함
-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 <표 3-41>과 같음

<표 3-41>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내용

영역	세부영역
성인지 교육 실태	교육실태, 현장에서의 반응, 교육의 어려운 점, 개선사항 등
교육방법	사용하는 교제, 강의자료 작성법, 자료수집방법 등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매뉴얼의 문제점, 매뉴얼에 추가될 사항 등

나. 폭력 예방교육의 문제점 및 프로그램 방향

1) 폭력 예방교육의 문제점

○ 교육시간의 부족

- 제주지역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의 경우 한 시간 혹은 한 시간 반 내에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내용을 모두 다루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곳이 많음
- 따라서 실제로 주제별로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기가 어려움

○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피교육 대상자들이 오히려 교육을 식상하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음

- 이론이나 통계, 실태에 관한 내용도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집중도가 떨어짐

○ 사이버나 동영상 시청으로 교육을 대신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됨

- 동영상을 실행하기만 하고 다른 일을 한다거나, 시작하자 마자 바로 끝까지 실행해버리는 등, 효과성이 별로 없음

○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집합식 교육도 효과가 별로 없음

- 대상별, 연차별로 대상자를 나누고 교육내용과 방식도 달리할 필요가 있음

2) 프로그램 방향

(1) 프로그램의 문제점

○ 집단별, 대상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의 부재

- 여성가족부 강의자료 들이 영역별, 대상별로 세분화 되어있지 않음
- 또한 교육대상의 규모에 따른 별도의 교제도 나와있지 않음

○ 퇴기에 걸친 단계별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문제

-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필요함, 1단계 의사소통, 2단계 성차별 등 퇴기별, 단계별로 프로그램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교육 프로그램 형식이 다양하지 못함

- 놀이, 체험식 교육 등을 개발하여 몸소 체험하면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교제개발이 필요함

○ 프로그램 내용의 단순함

- 폭력의 개념, 법체계, 실태 등으로 이루어진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매년 반복
- 특히 남성들이 모두가 가해자처럼 비쳐짐. 접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2) 프로그램 방향

○ 폭력들의 근원인 권력의 차이를 담아내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함

- 거부감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제주사회가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률이 높은데, 폭력 예방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각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왜 해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게 해야 함
- 교육내용 전반에 성인지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게 들어갈 필요 있음. 특히 공무원은 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며 직접적으로 국민을 만나는 위치이다 보니 성 차별에 대한 인식이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방적 지식전달 교육이 아닌 소통과 공감에 관한 내용으로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스트레스 관리, 삶의 의미, 행복이라는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잘 못 되었는지 등을 이야기하면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적게 언급해도 효과적으로 강의 할수 있음.

○ 일회성 교육이 아닌 단계별로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근무연차에 따라 다른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 필요함
- 폭력예방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져야 함

○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성인 인성 교육 같은 느낌이 드는 프로그램 개발이 좋을 것 같음.
-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토론하고 느끼게 해야 함
- 남자에 의한 여자의 피해를 강조하기보다는 개개인이 평등한 인권으로의 접근

이 필요할 듯함

- 자기의 인권 존중을 받으려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행복한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소통·배려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교육이 되어야 함
-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을 활용하여 본인의 성통념 지수를 확인하는 계기와 교육을 받는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성인지 감수성 관련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도 집단별로 구성을 달리해서 여러 버전으로 나오면 강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
- OX퀴즈와 같은 코너를 마련하여 교육 끝부분에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답식으로 정리하는 형식도 수강생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강의내용이 얼마나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을 듯
- 전문가 의견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① 교육목표가 성차를 사회문화적 배경 안에서 인식하도록 설정 ② 성인지력을 향상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함 ③ 여성과 남성의 식상한 대결구도는 지양하고 공감, 소통 등 감수성 관련 내용 추가 ④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함, 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제 4장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구성 개요
2.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틀
3. 프로그램 진행 및 지침
4.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 예시

1. 프로그램 구성 개요

가. 프로그램 목표 및 기본방향

- 성인지 감수성은 단순히 성차별이나 제도적 정책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젠더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은 결국 문화라는 큰 틀 속에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젠더폭력이 발생하는 원인 역시 그러한 행동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사고체계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습득한 지식과 사고체계를 기반으로 일정한 조직 내에서 형성된 성별문화의 연속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함
- 그 이유는 감수성은 ①자기가 소속원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집단, 조직, 사회의 역동적 활동과 그 경향성 ②집단 속에 있는 각 개인의 감정과 언동,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③집단에서의 각 개인의 역할 ④각 개인이 자유롭게 되고, 책임의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 ⑤집단이나 조직이 변혁되어가는 역동적 과정을 깨닫는 통찰력 등을 겪으면서 학습에 의해 발전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은 성차별이나 성역할 고정관념, 젠더폭력에 대한 통념이 조직문화 속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현실적 문제와 정의 실현의 괴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을 갖고자하는 의지가 요구됨. 이는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단순한 문제의식 수준에서 차별적이거나 정의롭지 못한 속성을 인지하고 행동적으로써 그 의사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임
- 이를 근거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젠더폭력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상황을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
 - 젠더폭력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 행동으로 인한 영향, 즉 행동의 결과를 예

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

- 성인지 감수성 제고는 개인적으로는 인간관계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이와 같은 성평등한 조직문화 속에서 성장한 정책실무자는 향후 성인지적 정책 실천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함

나. 프로그램 구성요소

- 일반적으로 감수성 훈련은 인간관계 훈련의 한 방법으로 집단 속에서 행동의 개선을 유도하는 대인관계 증진기법으로 이해됨. 또한 감수성 훈련은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인식을 확인하고 집단 속에서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협동적으로 발전하고자하는 집단 역동관계 훈련임
- 감수성 훈련 활동은 자기의 발견과 타인의 이해를 기본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 개선과 행동의 변용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 느낌, 관점, 행동 등의 특징에 대해 눈뜨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든 점에서 자기와 같지 않은 독자적 존재임을 알게 하며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의사소통의 현상, 집단의 형성과 발전 등에 관심을 갖게 함
- 감수성 구성 지표는 감수성의 종류에 따라 정의가 상이하여 기준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 가운데 주로 정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도덕감수성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는 J. Rest가 창안한 네 가지 구성요소 모형(The Four Component Model)⁹⁾과 이진영(2010)에 의해 도출한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¹⁰⁾ 측정도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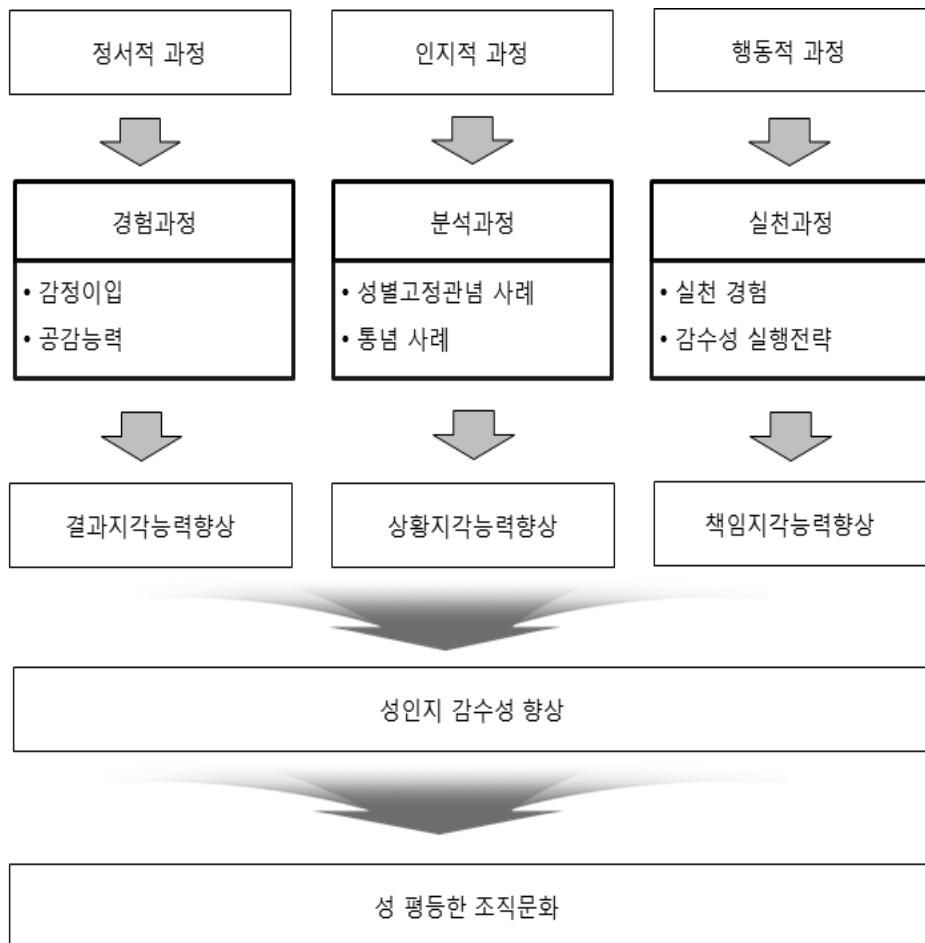
9) J. Rest가 창안한 4구성요소모형(The Four Component Model: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은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문제를 잘 지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헤아리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도덕 감수성을 측정도구의 지표로 활용된 것이다.

10) 이진영(2010)은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단지 개인 여성과 남성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자의적으로 구별 짓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이분법적이고 특권적인 사회 질서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젠더감수성 측정도구는 첼과 스타로스타(2000)의 문화 간 감수성 이론과 김양희 · 정경아(1999)의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이론적 구조를 참고하여 젠더감수성 구성요소를 파악하였다. 젠더감수성을 일상적인 성차별주의와 젠더이분법

재구성하여 활용함

-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의 하위요소로 상황(사실)지각 감수성, 결과지각 감수성, 책임지각 감수성을 선정함

〈그림 4-1〉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 구성요소



에 대한 정서적인 불편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정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젠더감수성 측정도구를 개발한 것이다.

2.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을

가.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통합교육 운영지침에 따르면,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공통영역/최소 40분 -120분)을 실시하고,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교육은 세부 내용을 ①기본, ②핵심, ③주요 내용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단, 교육 대상, 시간 등에 따른 강의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 교과목의 기본내용을 토대로 핵심내용, 주요내용을 조합하여 교육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우수사례 발굴, 분석 내용 등을 적극 추천을 권고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합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지훈련을 성에 대한 다양성, 차이와 차별 구분하기, 통념 점검, 젠더 관련한 폭력 이슈분석 등의 내용으로 콘텐츠로 구성함.

〈표 4- 1〉 통합교육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한 인지훈련 내용

구 분	내 용	활 용
총 론	각 교육의 공통영역 교육	최소 40분-120분
감정이입	섹슈얼리티의 이해	
개방성	성에 대한 다양성	
비폭력	성차별 및 폭력 통념 점검 성문화와 왜곡된 성인식	다양한 인지훈련
자기성찰	젠더 관련한 폭력 이슈분석 등	

나. 프로그램 구성틀

- 이진영(2010)에 의해 도출한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측정도구의 구성 요소¹¹⁾로 그 세부적 사례를 개발하여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구성함.

〈표 4- 2〉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 구성틀

기본 목적	하위 목표	세부 활동	세부 목표
성 평등한 조직문화	감정이입	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이해 ② ‘동의’의 의미 알기 ③ 피해자 이해	① 성적 의사소통 향상 ② 폭력 통념 수정 ③ 공감능력 향상
	개방성	① 섹슈얼리티의 대한 이해 ② 차이와 차별 이해	① 다양성 및 인권 존중 ② 평등의 가치
	비폭력	① 왜곡된 성문화 확인 ② 가정폭력의 이해	① 건강한 성 인식 제고 ② 폭력발생의 올바른 귀인
	자기성찰	① 성 차별의 인식 ② 성역할 고정관념 점검	① 자존감 향상 ② 성 평등정책 향상
	최종목표	① 성인지 감수성 향상 ② 성 인권 의식 제고	

11) 이진영은 젠더감수성의 내용으로 감정이입, 개방성, 비폭력, 자기성찰의 4가지로 다음과 같이 개념정의 하고 있다(이진영, 2010: 32). ①감정이입(Empathy) :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자기 자신의 경험과 다르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②개방성(Open-mindedness) : 다양한 차이를 편견없이 존중하며 자신의 차이도 솔직하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③비폭력(Nonviolence) :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부정의를 폭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④ 자기성찰(Self-reflection) : 자신이 내면화하고 있는 일상적인 성차별주의와 위계화된 이분법적 젠더 수행을 감지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

3. 프로그램 진행 및 지침

가. 프로그램 진행

- 형 태 : 집단교육 프로그램
- 대상자 : 공공기관 및 기본교육 대상자
- 교육주기 : 연 1회-2회 이상 진행이 적절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 ※ 교육효과를 위해서는 구성원이 학습한 것을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연속적 진행이 바람직하나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배분이 요구됨
 - ※ 통합교육 운영지침에 따르면 성평등 관점에서의 총론교육과 개별교육(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통합교육의 경우 각 폭력유형별로 1/3시간(20분) 이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회기구성 : 2시간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나 각 기관 및 진행자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이론 부분과 활동부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
 - ※ 통합교육 운영지침에 의하면 통합교육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전문강사 대면 교육 적극 권장「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 교육은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 평 가 : 사전 사후 실시
 - 평가척도 : 젠더 감수성 척도 테스트
 -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및 사후평가를 실시

나. 프로그램 진행 지침

○ 진행자의 태도

- 성별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 학습자에게 존중, 공감, 따뜻함, 솔직함,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 진행자 스스로 공감적 및 정서적인 반응을 통해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
-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및 피드백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 지속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자기점검 및 사례 개발 연구를 위한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 프로그램 준비

- 학습 목표와 함께 기본방향을 확인하고 이론을 점검한다.
- 편안하고 집중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담당자에게 교육환경을 사전 체크한다.
- 원활하고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다.
- 진행 내용 및 기법 등 진행자 유의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학습자의 직군별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 실시

- 교육 전반에 대해 진행을 간략하게 안내 한 후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 프로그램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학습 및 참여 동기를 높인다.
- 학습자가 숙지해야하는 태도나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무엇보다도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학습자는 사회적인 지위나 학식, 연령, 남녀, 경험 유무를 떠나서 평등한 입장에서 참여해야 한다. 학습자가 시도해야 할 사항과 피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도해야 할 사항	◆ 피해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귀를 기울인다. • 느낀 대로 솔직하게 말하며, 정직해야 한다. • 타인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 이야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저변에 깔린 기분, 감정, 욕구, 의도까지 이해한다. • 활동에 진지하게 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활동에서 행한 모든 이야기기에 대해 비밀을 염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에게 총고, 조언, 훈계하지 말아야 한다. • 상대방을 판단, 평가, 비판하지 않는다. • 자기 생각에만 빠지지 않도록 한다. • 주제와 상관없는 자기 말만 계속하지 않는다. • 부담스럽게 질문하거나 따지지 않는다.

- 필요에 따라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시간(5분 내외)을 배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목표 및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 진행 중 학습자가 어떤 감정이고, 그와 관련된 생각은 무엇인지 인식하도록 적절히 중간점검을 한다.
- 용어를 설명해 줄 때는 되도록 쉬운 단어로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진행 중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나머지 구성원들과 논의과정을 통해 합의한다. 이때 진행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반드시 슈퍼비전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 프로그램 마무리

- 이론 내용을 확인하되 프로그램의 인지력 부분에 중점을 둔다.
- 가능한 학습자로 하여금 교육 후 소감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및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4.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 예시

가. 감정이입 : 성적 의사소통

목 표

- 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와 스스로 성에 대한 행동을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한다.
- 성적 주체로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존중할 수 있다.

활동지 및 준비물

- <활동지 1> 성의식 자기점검
- <활동지 2> ‘동의’의 개념 및 중요성 알기
- <활동지 3> 성폭력 모의재판
- <활동지 4> 피해자 공감하기

과정	교수 학습 설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성의식 자기 점검 .	<활동지1>
이론	❖ 성적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 자기결정권의 이해- 거절’의 맥락과 ‘동의’의 의미- 피해자 이해	<활동지2> <활동지3> <활동지4>
점검	❖ 동의의 개념_ OX 문제	정답 ① X ② X ③ O ④ O ⑤ O

성인식을 점검해 봅니다. 질문에 답한 합계점수가 낮을수록 성의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활동지 1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1. 남성은 여성보다 성욕이 강하며 이를 억제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피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강간은 참기 어려운 성욕의 표현이다. 많은 경우 강간을 저지르는 이유는 성욕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낙태는 피임방법 중의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성매매는 나쁘지만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성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부끄러우므로 숨겨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성충동은 잘못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포르노는 청소년 시기의 남자들에게는 필요악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남성도 성폭력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성폭력은 피해자인 여성이 철저하게 예방하거나 저항한다면 일어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합 계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1999) 밸류 채구성>

< 성인식 과정 및 성경험을 성찰하기 위한 자세 12) >

- 자신을 성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성가치관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 자신의 인식이나 느낌이 형성된 과정과 배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성과 연관해 최초의 기억이나 경험은 무엇이고, 사춘기 시절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성에 대한 지식을 접했는가?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성적 상상이나 욕망은 무엇이고 이러한 욕망들은 어떻게 표출되거나 억압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 사회의 성적 각본에 길들여지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한국성폭력상담소-이경미, 1999:45-46)

1. 성적 자기결정권의 이해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

이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은 우리는 누구나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성을 강요해 서도 또한 강요당해도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성에 대한 욕구와 느낌은 각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파트너와 시간, 방법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한편으로 원치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다.

2. ‘동의’의 의미

하지만 친밀한 관계일수록 ‘거절(NO)’은 쉽지 않다. 일상에서 많은 암묵적인 거절을 자신의 편리한 입장으로 ‘YES’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직접적으로 NO라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침묵 역시 동의가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심한다. 즉 진정한 의미의 ‘동의’란 ‘No’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 해 두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Yes’를 할 경우를 의미한다.

신뢰적인 이성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감수성의 차이를 체득하여야 한다.

3. 피해자 이해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생식기 주변의 염증, 임신, 낙태와 두통, 방광염, 불면증, 섭식장애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정신적 후유증으로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 정신 병리학적 현상을 경험하게 되며 불안, 긴장, 분노, 우울, 무기력감, 수치심, 왜곡된 사고, 환청 등의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사회적 후유증으로는 대인관계에서 공포나 남성기피, 가족과의 관계유지 어려움, 자살시도, 이성에 대한 집착, 과잉 성행동, 자해, 폭력적인 행동, 등 일련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활동지 2

<p>♥ 연인이 '성적인 관계' 를 동의하였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적어보세요.</p>	<p>♥ 연인이 '성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적어보세요</p>

활동지 3

- 아래 사례를 이용하여 변호팀과 검사팀으로 나누어 논의해 보세요.
 - 속하는 그룹에 ○ 표시한 후 의견을 기록합니다.

(변호 / 검사) 의견

◆ [사례] 아내에게 강간당했다"는 남편...과연 그게 가능할까?

남편의 주장 : "아내와 아내의 친구가 날 때린 후 온몸을 뚫어... 당일 자정쯤 성폭행" , 아내의 주장 : "합의하에 성관계... 위자료 받아내려는 꼼수"

남편은 "아내에게 강간당했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이 유혹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달 26일 서울중앙지검은 이혼을 원하는 남편 박모(38)씨를 29시간 동안 가둔 채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아내 심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 심씨는 남편을 감금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남편이 먼저 요구했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남편은 키 165cm에 체중 58kg, 아내는 키 170cm, 체중 60kg으로 아내의 덩치가 더 컸다. 또 현장에는 아내를 도운 키 185cm, 체중 77kg의 남자 김모(42)씨가 있었다. 그렇다고 한들, 과연 여자가 남자를 강제로 성폭행할 수 있었을까.

박씨는 23세이던 2000년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할 당시 심씨를 처음 만나 연애했고 이듬해 결혼했다. 심씨는 결혼 후 유학원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 박씨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외국 대학에 진학했다. 부부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서로에게 애인이 있다고 의심했다.

남편 "새우처럼 몸 구부렸지만..."

남편 측 김미진 변호사에 따르면 아내의 행동은 용의주도했다고 한다. 줄곧 남편의 이혼 요구에 반대해 왔던 심씨가 돌연 "이혼에 합의해주겠다"고 하자 외국에 있던 박씨는 지난 5월 6일 아침 입국했다. 같은 날 오전 박씨가 서울 경운동 심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친구' 김씨와 함께 있었다. 박씨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둘이 달려들어 때리기 시작했다.

남편이 쓰러지자 둘은 청테이프로 박씨의 양쪽 손목과 발목, 팔, 종아리를 둘둘 묶은 뒤, 케이블 타이로 같은 곳을 다시 한 번 결박했다. 안대로 눈도 가렸다. 이후 김씨는 집에서 나갔지만 아내는 남아 "3000만원만 있으면 청부실인으로 목숨 빼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박씨를 계속 협박했다. 박씨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바람을 피워 혼인이 파탄 났다"고 소리 내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이를 휴대폰으로 녹음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물만 줬다. 오후 4시쯤 남편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깅충 걸음

으로 갔으나 손이 묶여 있어 여의치 않았다. 아내가 도와주었다. 이때 아내는 남편에게 "오늘 (너를) 강간할 거야"라고 말했다고 남편은 주장했다. 자정쯤 성관계가 시작됐다. 아내는 침대에 누운 남편에게 나체로 접근했다. 남편은 "벽 쪽을 보고 누워 새우처럼 몸을 웅크렸다"며 "그러나 아내가 유사성행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금 뒤 아내는 강제 성관계를 시도했고 남편이 몸부림쳤으나 결국 강간당하고 밀았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다. 아내는 이후 남편에게 "강간이 어땠냐"고 물었다. 남편은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아내 "위자료 더 받아내려는 꼼수"

아내 심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입장이다. 심씨의 변호인 왕미양 변호사는 "박씨가 통증을 호소해 6일 오후 9시 이후에는 상체 결박을 풀어주고 발목도 느슨하게 다시 묶어줘 사실상 자유 상태였다"고 말했다. 박씨가 나가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뺑을 줬다고 주장했다.

성관계는 남편이 먼저 원했다고 아내는 주장했다.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 내연녀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문제 삼자 이혼을 원하던 남편의 태도가 누그러지면서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며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자고 일어나 이혼 문제로 다시 다투기 시작했다. 오후 3시쯤 남편은 아내를 112에 신고했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아내가 나를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왕 변호사는 "아내가 2001년 결혼 후 남편을 위해 억대의 유학비를 부담했는데도 남편은 바람을 피웠다"며 "남편이 이혼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 위자료를 더 받아내려고 있지도 않은 강간을 꾸며냈다"고 말했다. 남편은 '강간' 사건 직후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했다.

아내의 남편 강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비뇨기과 전문의 최현민씨는 "상대가 생면부지의 타인이 아닌 아내라면 감금·협박당하는 중에도 익숙한 느낌이 있어 남성의 홍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남성이 성적으로 홍분돼 사정까지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여성이 강간 혐의를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해진 것은 재작년 6월 강간죄의 폐

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부터다. 지난 4월에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전모(45)씨가 여성으로는 처음 강간미수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아내가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씨가 처음이다.

출처 : 조선닷컴 / 2015.11.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6/2015111602347.html

활동지 4

○ 피해자 공감하기

캐나다의 Nova Scotia 고등학교의 남학생이 학교에 핑크색 셔츠를 입고 왔는데 그것을 본 친구들이 남자가 핑크색을 입었다는 이유로 놀리며 괴롭히기 시작하여 폭력이 심화된 사건이다. 핑크색 셔츠를 입었다는 편견으로 인해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던 남학생이 되어 그 심정을 가해자에게 표현해 보세요.



진행 Tip 및 주의점

◆ “캐나다에서 시작된 ‘핑크 셔츠 데이’”

캐나다의 Nova Scotia 고등학교의 남학생이 학교에 핑크색 셔츠를 입고 왔는데 그것을 본 친구들이 남자가 핑크색을 입었다는 이유로 놀리며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두 David Shepherd, Travis Price 는 저렴한 핑크색 셔츠를 직접 대량구매해서 학교친구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작지만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날 나누어 받은 핑크셔츠를 입었고 핑크색 셔츠를 입었다고 폭력을 행하던 학생들은 멈추게 됩니다.

PINKSHIRTDAY.CA
coastcapital
#PINKSHIRTDAY

Pink Shirt Day - February 24, 2016

87 01 19 44

출처 : <http://pinkshirtday.ca/>



진행 Tip 및 주의점

성폭력이란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적 의미의 강간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이해됩니다. 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물리적인 강제력 외에도 연령, 지적수준,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형태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에서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는 통념에 관해서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행위는 이성 간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점검

'동의'의 개념_ OX 점검하기

▣ 다음은 연인과 성적 행동 시 '동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OX하세요.

- ① 원치 않는 행동에 대한 거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동의'를 한 것이다.
- ②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를 의미한다.
- ③ 진정한 의미의 동의는 'No'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 및 조건에서 가능하다.
- ④ 적극적으로 'Yes'를 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동의이다.
- ⑤ 무엇보다도 '동의'는 타인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답 ① X, ② X, ③ O, ④ O, ⑤ O

나. 개방성 : 섹슈얼리티와 평등

목 표

- 섹슈얼리티와 평등의 가치를 이해한다.
- 편견과 폭력의 문제를 고민하고 성 인권적 감수성을 높인다.

활동지 및 준비물

- <활동지1> 차이와 차별
- <활동지2> 아이디어 만들기

과정	교수 학습 설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이와 차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활동지1>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섹슈얼리티의 이해❖ 평등의 가치	<활동지2>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팔호 넣기	정답: ① 섹슈얼리티 ②기본,기회,조건,결과

활동지 1

-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철 손잡이		
저상버스 ¹³⁾ 가 모예요?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저상버스 투입노선 크게 늘린다. <small>뉴스핌 http://www.newspim.com/common/redirect.jsp?newspid=2012020800...</small></p>

13) 저상버스는 장애인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다리가 불편한 노인, 임산부, 짧은 치마나 높은 하이힐을 입은 여성 등에게도 편리함을 주고 있다.



진행 Tip 및 주의점

우리는 몸무게, 나이, 생김새가 다르듯, 인종, 국적, 장애유무, 성별, 성정체성, 가족형태, 재산, 학력 등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때론 이런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인권이며, 다른을 틀림이라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폭력임을 이해합니다.

다음은 차이를 개선한 신문에 보도사례입니다.

- 성별평가 적용했더니 지하철 손잡이 높이가 달라졌다.(한국일보 2012-03-15)

2007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성인 남성의 키에 맞춰왔던 지하철 손잡이를 10cm 차이가 나는 두 가지 높이로 설치했다. 같은 해 서울 송파구는 남성화장실에도 아기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했다. 전라북도는 성별에 따라 질병의 발병위험이 크게 다른데도 저소득층 건강검진 시 남녀 모두 똑 같은 항목의 검진을 실시하던 것을 2008년 성별에 따라 바꾸었다

- 서울 시내버스, 2025년까지 저상버스로 100% 교체(아시아 경제 2015.12.03)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또 버스는 2025년까지 장애인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로 100% 교체된다.

장애인의 이용하기 어려웠던 버스도 개선된다. 시는 2025년까지 도로구조상 운행이 어려운 노선을 제외한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현재 도입률 36.2%)한다. 저상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노선은 추후 도로개선까지 병행해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 섹슈얼리티의 이해

성(性)은 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일생을 통해 성지식, 성의식, 성행동을 습득하기도 하고 변화 발달시키기 때문에 성은 인간의 삶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좌우하기도 하는 불가분의 관계의 속성을 갖고 있다. 신체적 성(sex) 그리고 사회심리적인 성(gender)을 어떻게 균형있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충족시키는가는 성 정체감을 포함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적 지향(性的指向)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 성적 지향의 분류에는 크게 반대 성에 이끌림을 뜻하는 이성애, 같은 성에 이끌림을 뜻하는 동성애, 두 성 모두 또는 때에 따라 둘 중 한 성에 이끌림을 뜻하는 양성애, 이분법적인 남성과 여성 외에도 모든 성에 이끌릴 수 있음을 뜻하는 범성애, 성적 이끌림이 없음을 뜻하는 무성애 등이 있다(구글 위키아백과).

섹슈얼리티는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 성별 정체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한정되어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대’가 중시된다. 왜냐하면 성적 지향은 다른 사람과의 유대를 기반으로 한 다른 사람과의 행동 혹은 행동하고 싶은 욕구에 의한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섹슈얼리티란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맺음, 성적 행위, 정체성, 선호, 욕망, 신념,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성적 인격’을 뜻한다. 성적 행동 외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다양한 애착, 가치와 전념 등에서 이해되므로, 섹슈얼리티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차별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여성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소외와 편견에 대한 인권적 감수성에서 접근하고 그 정책적 실천대안을 찾기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포함한다.

2. 평등의 가치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우리나라 헌법 제11조)

평등의 가치란 이처럼 누구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과 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영국의 사회학자 브라이언 터너는 평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의미와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

- ① 기본적 평등 : 누구나 처음부터 동등한 존재로 태어났으며, 사회구성원 각자는 예외 없이 평등하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평등을 의미한다.
- ② 기회의 평등: 신분이나 지위, 재산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 ③ 조건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 되려면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기회 뿐 아니라 출발점의 조건과 환경도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리한 조건이나 환경에 놓인 사람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점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 ④ 결과의 평등 : 결과의 평등은 특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많이 활용되는 개념으로 기회의 평등이나 조건의 평등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더라도 개인의 재능 차이에 따라 불평등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평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활동지 2

- 소수자(여성, 아동, 장애인, 성소수자 등 하나를 선택)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세요

▣ 다음 알맞은 개념을 괄호에 써 넣으세요.

- ① () 란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맺음, 성적 행위, 정체성, 선호, 욕망, 신념,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이해된다.
- ② 브라이언 터너는 평등을 ()적 평등, ()의 평등, ()의 평등, ()의 평등으로 구분한다.

☞ 정답 ① 섹슈얼리티, ②기본, 기회, 조건, 결과

다. 비폭력 : 문화와 젠더폭력

목 표

- 성적 위험성과 성적 대상화의 문제점을 이해한다.
- 사회문화적 젠더폭력 특성을 이해한다.

활동지 및 준비물

- <활동지 1> 감수성 테스트
- <활동지 2> 성표현물 만들기
- <활동지 3> 타임아웃계약서 작성하기

과정	교수 학습 설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감수성 테스트	<활동지1>
이론	❖ 왜곡된 성표현물과 성적 위험성 ❖ 가정폭력의 사회문화적 접근	<활동지2> <활동지3>
점검	❖ 팔호넣기와 OX 혼용형식	정답: ① 성적 대상화 ② O

활동지 1

○ 폭력 감수성 테스트입니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1. 주변에 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주위를 보면 정말 맞을 만한 짓을 하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폭력을 당한 것은 창피한 일이므로 덮어두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4.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수가 편하기 위해 소수의 사람이 폭력에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진행 Tip 및 주의점

폭력은 누구보다도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져서 폭력에 대해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폭력은 무엇보다 자신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 왜곡된 성표현물과 성적 위험성

성 또는 성행위를 표현하는 일체의 표현물을 우리는 성표현물이라고 한다.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림, 애니메이션, 사진, 소설, 행위 등 다양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음란한 것일까? 아름답고 밝은 성표현물은 없을까? 흔히 음란한 성표현물로 여겨지는 음란물은 포르노, 에로잡지 등이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성폭력(sexual violence)을 담고 있다. 전형적인 강간 상황에서 여성은 처음에는 남성의 공격에 강하게 저항하지만 점차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고 저항이 누그러지는 장면으로 전개된다. 이것은 ‘여성은 적극적으로 강간을 수용한다.’라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은 낮아지고 ‘피해여성도 강간의 상황을 즐겼다’, ‘대부분 여성은 강간당하기를 은근히 바란다.’ 등 강간에 대한 왜곡된 믿음을 수용하는 경향을 높이게 된다.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는 대중매체에 의한 성적 사회화와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강조한다. 성적 사회화가 주로 대중매체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중매체가 다루고 있는 성행위에 대한 표현과 성과 관련된 정보들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 것은 매우 심사숙고 되어야만 하고 그런 후에 그런 것들이 묘사되어야만 한다하고 있다(대한가족보건협회, 1999). 대중매체의 성적 대상화에 따른 영향력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성적 대상화’란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의 의지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적인 시선과 성적인 대상물로 바라보거나 직·간접적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의 사회문화적 접근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것이 가부장제와 폭력에 대한 허용적 사회문화적 태도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부장제라는 전통적 가족문화 속에서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가족을 통솔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주어진 절대적 힘의 불균형은 때로 왜곡된 형태로 변형되어 다른 가족 구성원을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폭력을 합리화하기도 하였다.

제주는 섬의 특성상 어업을 주로 생업으로 하면서 남녀성비의 차이가 많았던 과거에 소위 작은집을 두는 것이 용인되었던 때가 있었다. 한 집안에 두 아내를 두고 가부장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억압들이 당연시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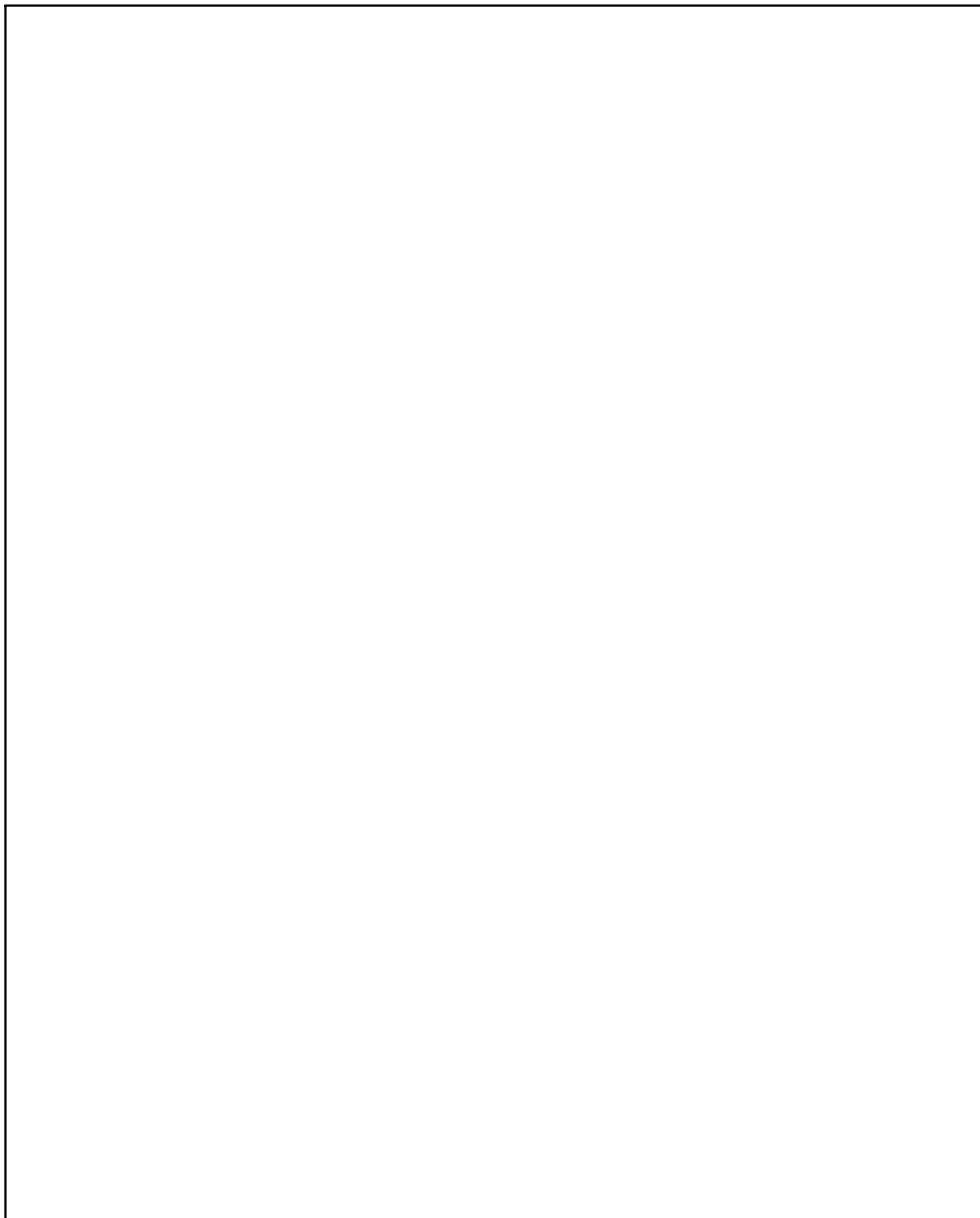
가정폭력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흔히 가족 간에 다툼에서 일어나는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반복되면서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폭력에 비해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고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만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 안에는 사회문화적으로 가족을 통솔하기 위한 왜곡된 힘의 논리와 폭력의 합리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힘은 단지 신체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 등 매우 다양한 차원의 힘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폭력 또한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고 종전의 가족문화를 전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사회문화적 구조 안에서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을 존중하고 가정과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의 기회를 갖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성평등을 지향하고자 함이다.

활동지 2

- 다채롭고 자유롭게 성(性)을 표현해 봅니다.

- 주변 매체 및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그리기거나 만들기



활동지 3

가정폭력 타임아웃 계약서

나의 경고신호	
타임아웃 싸인	
타임아웃 방법	
마무리 방법	
20 . . . _____ (서명)	



진행 Tip 및 주의점

◆ 타임아웃(time out)이란 화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상대방과 해 놓은 약속에 따라 잠시 자리를 떠나서 화를 조절함으로써 갈등 및 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즉 일단 화가 났으니 중지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 타임아웃 계약서의 예

남편의 약속

나는 화가 나면 타임아웃을 알리기 위해 손으로 T자를 그릴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한 시간 동안 걸겠다. 술은 마시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아내의 잘못을 곱씹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돌아온 후 아내가 말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물을 것이다. 만약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다시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것에 동의 할 것이다. 내가 실수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아내의 약속

남편이 타임아웃 신호를 하고 떠나면 나 역시 신호를 보내고 그가 나가는 것을 허락 하겠다. 그가 나가 있는 동안 나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그의 잘못을 곱씹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돌아오면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출처 : 좋은 벗 상담교육센타 (<http://www.joeunbut.net>)

점검

혼용형식

- ▣ ①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의 의지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성적인 시선과 성적인 대상물로 바라보거나 직·간접적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을 ()라고 한다.
 - ▣ ② 가정폭력은 힘이 강한 가족구성원 중 한사람이 힘이 약한 다른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학대 행위로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O / X)
- ☞ 정답 : ① 성적 대상화, ② O

라. 자기성찰 :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

목 표

- 차이와 차별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을 설명할 수 있다

활동지 및 준비물

- <활동지 1> 성 평등한 표현만들기
- <활동지 2> 성역할 고정관념 찾기
- <활동지 3> 성차별 요소 찾기

과정	교수 학습 설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성 평등한 표현 만들기	<활동지 1>
이론	❖ 성적 사회화와 성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	<활동지 2> <활동지 3>
점검	❖ 사후 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역할 개방성 척도	

활동지 1

- 최근 한 성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표현 또는 성적 대상으로서 이미지를 최소화하는 대안적 표현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 다음 중 부적절한 표현을 찾아 변경해 봅시다.

<예시>	<대안적 표현>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
레이싱 걸	■
배우자	■
명예협정	■
얼굴마담	■
바지사장	■
바깥양반	■

- 위의 예시 외에 제주도 문화에서만 사용되는 중립적인 언어나 차별적인 언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ex. 삼춘: 남녀구분없이 손위의 이웃집이나 마을 사람, 부모님의 친지 할 것 없이 초월해서 부르는 호칭.



진행 Tip 및 주의점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 경제학의 대가 애덤 스미스
레이싱 걸(×) → 레이싱 모델
집사람, 안사람, 아내, 바깥양반(×) → 배우자
얼굴마담, 바지사장(×) → 명의사장
신사협정(X) → 명예협정(○)

국립국어원(2008)년에서 발간한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형제애, 효자상품과 같은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 된 표현, 불필요한 성의 강조를 강조하거나 선정적 표현, 고정 관념적 속성 강조한 표현, 성 비하 표현으로 구분하여 성차별적 언어 사용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 ① ‘미녀 새~, 탱크~’ 등 성별화 된 언어 표현을 최소화해야 할 것
- ② ‘개미허리, 얼짱, 조각미남, 명품 복근’ 등 과도한 외모 관련 표현을 자제해야 할 것
- ③ ‘여성스러운, 양공주, 천상사내, 소심남’과 같은 긍정 및 부정적으로 특정 성 역할을 고정 관념적으로 결부시킨 성차별적 표현을 자제해야 할 것
- ④ 비하적 표현을 다른 말로 대체하는 등, 사용을 피해야 할 것
예) 사모님식 투자 → 주먹구구식 투자 미망인 → 고 ○○○의 부인
돌진남, 된장녀, 과부, 홀아비, 걸레, 자연산, 내연녀, 내연남 → (×)
- ⑤ 기준의 대안적 표현을 활성화해야 할 것
예)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 경제학의 대가 애덤 스미스
매춘부, 윤락녀 → 성매매 여성 레이싱걸 → 레이싱 모델, 경주 도우미
편모 편부 → 한 부모 처녀작, 처녀항해 → 첫 작품, 첫 항해
집사람, 안사람, 바깥양반 → 배우자

1. 성적 사회화와 성차별

'Gender(사회심리적 성)'은 생물학적 성(Sex)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회적, 문화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성역할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성역할이란 여성과 남성이 그 성에 적절하다고 규정된 행위와 문화적 기대치라면 성역할 정체감이란 개인 속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성(性)에 따른 행동 특성이나 태도 혹은 흥미를 동일시하는 것을 말한다.흔히 '남성답다'거나 '여성답다'라는 성별 고정관념으로 표현된다. 이 정형화된 성 정체감은 남성과 여성에게 고정 관념적으로 어울린다고 여겨지는 행위, 태도, 가치관 등을 습득하고 내면화함으로써 개인의 능력보다 성(sex)에 따라 그 역할을 정해놓고 활동 영역을 제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자신의 본래성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형화된 요소들에 의해 옷 입는 방식, 직업, 머리모양, 말하는 태도, 감정까지도 '성(Sex)' 가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다. 이것은 편견을 낳고 편견은 차별로 이어진다.

따라서 성 차별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명백한 사회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남자는 씩씩해야 하고, 눈물을 보여서는 안되고, 모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남성다움의 신화에 비인간화되고 있다.

'성차별'이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성에 따라 열등성이 강조되거나 사회문화적 통제와 억압을 강요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한시키며 일방의 성이 다른 성에게 가해지는 착취 및 비하를 합리화하는 포괄적인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이나 여성을 평가할 때 개인적 특성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생물학적인 성별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남성의 역할 혹은 여성의 역할을 가지고 평가하는 우리 사회의 관행

▶ 성차별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한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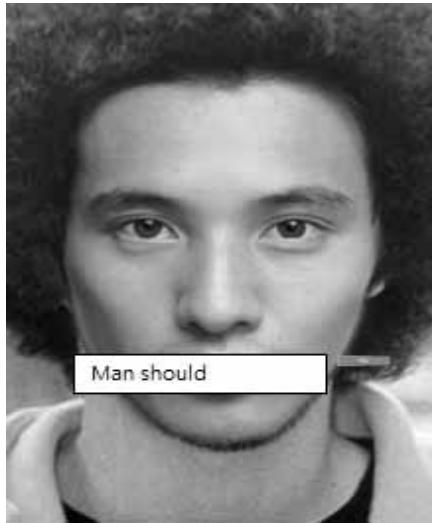
활동지 2

○ 제주문화 속 성별 고정관념 찾기¹⁴⁾

ex. 제주도에서는 여자일과 남자일을 구분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밭일이나 물질은 여자가 하는 일이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었지요 그 외 무엇이 있을까요?

	<p>♣ 여자는 ()해야 한다.</p> <p>.....</p> <p>.....</p> <p>.....</p> <p>.....</p> <p>.....</p>
--	---

14) 남성 사진(배우 원빈)은 UN WOMEN 포스터의 성별고정관념을 남성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재조명하였다.



Man should

♣ 남자는 ()해야 한다.

활동지 3

- 주변의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성 차별적 요소들을 찾아보세요.



진행 Tip 및 주의점

<예시> 다름을 고려하지 않은 남녀 화장실이나 가정 등 여성의 일과 남성의 업무 등이 일반적으로 성차별적으로 예시되는 것들입니다. 제주도에서 전통적으로 성 차별되어 왔던 것을 찾아봅니다.성이 편향되지 않도록 남녀 서로의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차별을 이야기 하도록 합니다.

점검

사후 테스트

- 성역할 개방성 척도입니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1. 나의 성별에 기대되는 모습(남자다움/여성스러움)과 일치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아이가 자신의 성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여성스러운 남자나 남자 같은 여자는 거부감이 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위 관료나 경영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게 항상 이상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남자보다 여자가 담배 피는 것이 더 보기 싫다.	①	②	③	④	⑤

제 5장

프로그램 활용방안과 향후과제

1. 프로그램 특성
2. 프로그램의 활용방안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과제

1. 프로그램의 특성

-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목표는 지식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인지적 목표를 포함하여 성인 학습자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로 하여금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체화된 성 평등한 가치의 태도를 갖고자 함에 있음
- 이를 위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점검하며 가치의 전환을 통한 심리적 변화를 이루고, 이와 같은 의식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행동화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목표 아래 개발된 본 프로그램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1. 학습자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재창조, 재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예시를 제시함
 2. 성인 학습자의 타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무교육의 현실을 수용하여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고 참여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활동중심으로 구성함
 3. 학습자가 토론과 질문을 통해 자신이 갖게된 느낌과 생각을 비교함으로써 이론적 점검과 함께 잘못된 통념은 맥락적 설명을 통해 수정이 가능함
 4. 학습자는 종전의 경험과 이전의 지식을 재평가함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체득 할 수 있음
 5. 개인적 측면 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성차별 및 성 고정관념에서 이루어지는 젠더폭력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음
 6.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는 등 참여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 진행은 역동적 참여가 가능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고 진행자와 학습자 모두 적극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무엇보다 진행자는 활동의 촉진자와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별 활동 외에 모둠에 의한 집단 활동의 경우 활발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관심과 욕구를 기반으로 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강조됨

2. 프로그램 활용방안

- 이 교육프로그램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여성정책담당자 외에도 일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됨
- 비록 여성정책 담당자가 아닐지라도 이들은 도내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주체로서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집단으로 그 실천적 주체자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이들 집단은 보수적 경향이 강하고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관습에 익숙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습적 문화를 재조명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제주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자 하는 시도만으로도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종전에 중앙에서 하달된 평준화된 교육에 의존해 왔던 것을 도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수행할 자력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도내 협조를 통해 자체적으로 강사 양성함으로써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 외에 활동에서 수행한 학습자들이 발굴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집약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과제

- 지금까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개발된 표준화된 교재 및 자료를 통해 양성된 전문강사들에 의해 수행되어져 왔음
- 또한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많은 부분에 이바지 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의무교육기관이 확대되면서 내용의 질적 향상의 요구뿐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특성화된 컨텐츠가 필요한 시점
-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도 섬 문화에서 탄생된 성차별적 요소와 성별고정관념을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시도되었고 제주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이해하

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새로운 견지에서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함

- 다만 제주지역의 문화적 요소들을 발굴한다는 것이 결코 단기간에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다만 장기적 계획을 통해 단계별 수행이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
-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공공기관 종사자의 특성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제주지역 폭력예방교육의 현황자료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뿐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담아내지 못함
- 또한 공공기관의 종류 및 종사자의 연령이나 근무년차 등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집단적 특성을 감안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제주지역 공공기관 종사자의 특성을 충분히 담아내는 심도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개발은 향후 과제로 남겨둠
- 본 연구는 문화적 접근의 시도에 머무르는 아쉬움과 함께 통합강의를 수행하는 강사로 하여금 성인지적 관점의 문화적 요소를 학습자와 함께 발굴하는 과제를 남기고 향후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함

참고문헌

- 김강식. 2010.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질서경제저널」 통권 제13집 1호. p. 35-52.
- 김영혜. 2004.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한국인구학」 제27권 제1호, p. 1-30.
- 김유리. 2012.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지역아동센터 아동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포럼. "아동성폭력 문제, 해결의 시작은 건강한 경계교육이다". p. 93-99.
- 김재엽·김희진·최장원. 2010. 「직장 남성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와 아내폭력의 관계에서 나타난 긍정적 의사소통(TSL)의 조절효과」. 한국소통학회 :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종철. 2010.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김황수진. 2012.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지역아동센터 아동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포럼 「순결교육이 아닌 성적자기결정권 교육으로」. p. 81-90.
- 대한가족보건협회(1999), 성교육 성상담 교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p.195-197.
- 박성민. 2013. 개정형법상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보호의 실제. 「성균관법학」 제25권 제3호. 129면-150면.
- 박옥임 외. 「성폭력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2004.
- 변혜정 외, 「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티」. 동녘, 2010.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2014).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통합 지원의 새로운 모색」.
- 송인자. 2009. 「양성평등과 성인지 관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신영호·최은하. 2015.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기본적 구성요건성". 「형사법 연구」. Vol.27 No.2, p. 149-174.
- 안상수 외. 2009. 「성인지력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이진영. 2011.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ity)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원, 석사학위.
- 양은별 외 4인. 2014. "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낙인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5, No. 5, p. 99-111.
- 양철수. 2015. "공공영역의 폭력예방교육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폭력예방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가정폭력 종합 대책 안」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여성가족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빌간, 무지개 행동 이반스쿨팀 번역. 2013.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 윤덕경, 김차연. 2015. 성폭력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과제. 「이화젠더법학」, 7(1), p. 73-107.
- 이석재·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 학회지 :사회및성격. 29(2001.2) pp.97-116
- 이수자. 1997. "한국의 산업화와 유교적 가부장주의". 「한독사회과학논총」 Volume 7. p. 261-281.
- 이은숙·강희순. 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 「동서간호학연구지」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20 no.1, p. 48-56.
- 이은아. 2009. "청소년의 성역할태도에서의 차이".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 사회학대 회논문집」 . p. 1203-1213.
- 이정모·손지영. 2010. "법 인지과학: 법 영역의 인지과학적 조명". 「서울대 법학」 제51 권 제4호. pp.347-398
- 이정모 외. 2009. 「인지심리학」 . 아카넷.
- 이화진. 2015.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장다혜. 2014. "성폭력 법담론: 합리적 법해석과 입법적 해결을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 판례분석에 있어서의 성인지적 관점 따라잡기 주제별 워크숍 발표자료
- 조옥라. 2003. "의식화 운동에서 성별 감수성 훈련으로". 『글로벌 젠더트레이닝 교육개발 사업보고서』 . (사)또하나의문화.
- 최영애. 2001. "우리사회 성문화와 양성 평등교육의 방향". 2001년 초등학교 성평등 의식 및 성교육 연수 자료집.
- 최은하. 2015.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형법 제302조)에서 '위계'의 해석".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 최은하. 2015. "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 해석론의 전환".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103호, 2015 . 가을), p. 5-31.
- 하동석. 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 사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10).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예방교육 교안」
- 행정학사전, 2009. 01.15 대영문화사

Rita L. Atkinson and Ernest R. Hilgard/홍대식 역, *Introduction to psychology*(심리학개론), 8ed., 1984, 7면)

Krech et al. (1962), *Individual in Society*, New York: Mc-Graw-Hill

Sathe, V.(1983), The Controller's Role in Management, *Organizational Dynamics*, Winter, 31-48.

연구보고서 2015-08

제주 공공기관 종사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 발행일 : 2015년 11월 30일
 - 발행인 : 현 혜 순
 -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064-710-3482, Fax. 064-710-497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 인쇄처 : 드림애드출판(064-752-3631)
-

ISBN : 979-11-87026-02-0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